

第145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2月22日(水)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現況報告(계속)(質疑)

- 가. 勞動部
- 나.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 다. 韓國產業安全公團
- 라. 勤勞福祉公社
- 마. 韓國海外開發公社
- 바. 韓國勞動研究院

審査된案件

1. 現況報告(계속)(質疑)

가. 勞動部	2面
나.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2面
다. 韓國產業安全公團	2面
라. 勤勞福祉公社	2面
마. 韓國海外開發公社	2面
바. 韓國勞動研究院	2面

(14時47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할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案件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會議에서 盧武鉉委員께서 動議한 釜山港運勞動組合의 非理 不正別扶을 위한 國會調查團構成動議案이었습니다.

이 動議案이 성립이 되고 表決 직전에 幹事會議의 1次協議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金炳龍委員의 의사에 따라서 오늘 會議開議 直前に 幹事會議에서 여러가지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本 委員長이 代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勞動部內에 釜山港運勞動組合 運營實態特別調查班을 구성을 하되 班長은 局長級으로 한다.

또한 이번 臨時國會 會期中에 調查結果를 報告토록 한다 이러한 代案입니다. 이렇게

幹事會議에서 합의된 代案을 政府側 勞動部長官께서 받아 들이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勞動部長官입니다.

釜山港運勞組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政府로서는 局長級을 班長으로 해서 1次 저희들이 調査를 해서 會期內에 報告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動議案을 提出하신 盧武鉉委員께서는 그 動議를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委員長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盧武鉉委員 감사합니다.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하나 勞動部の 調查結果에 따라서 또 다시 國會에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때 가서 다시 거론하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게 할 수 있는 國會의 權利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長官 그리고 盧武鉉委員 고맙습니다.

政府에서는 받아들인 이 代案에 충실히 책임이행을 하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 現況報告(계속)(質疑)

- 가. 勞動部
- 나.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 다. 韓國產業安全公團
- 라. 勤勞福祉公社
- 마. 韓國海外開發公社
- 바. 韓國勞動研究院

(14時52分)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現況報告를 계속해서 上程하겠습니다. 어제 會議에 이어서 質疑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會議에서 答辯을 듣지 못한 李康熙委員과 李相洙委員의 質疑에 대한 政府側의 答辯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나오셔서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勞動部長官입니다.

李康熙委員께서 質疑하신데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李康熙委員께서 職業紹介所 不條理 團東이 業務現況報告에 보면 612件인데 그 중에 行政處分과 司法處理로 內容을 區分한 이유는 무엇이나는 質問이 계셨습니다.

職業紹介所 不條理 團東은 每年 勞動部가 市·道및 檢察 警察이 合同으로 구준히 團東을 施行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團東한 結果 '88年度에 612件의 不條理가 적발되어 이 중 官許 紹介業所에 대해서는 許可權과 관련하여 營業停止 是止措置 등 350件의 行政措置를 하였고 無許可業所 非理 262件은 職業安定法 違反으로 司法機關에 告發措置한 것으로서 報告內容에서 편의상 구분한 것입니다.

李康熙委員께서 民間職業訓練院 施設裝備購入費를 용자한 곳은 어디며 融資條件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88年度중에 民間職業訓練院의 施設裝備購入

費를 용자한 곳은 木浦중장비 인정직업 훈련원 등 4個所이며 當時 融資條件은 年利 6% 3年据置 5年償還에 1個所當 15億원 限度에서 용자를 하였습니다.

'89年度부터는 融資條件을 年利 6% 5年据置 5年償還으로 해서 일부 완화 조치하여 職業訓練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熙委員께서 勞·使·政 懇談會 開催實績과 그 實效性에 대하여 質疑하였습니다.

勞·使·政 懇談會는 勞使問題에 대하여 質問과 討論을 통해 문제의 本質을 파악함으로써 勞·使·政 3者間에 共同認識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賃金引上和 地域勞使 問題가 있는지 業體間의 均衡과 妥結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勞·使·政 간담회를 隨時로 開催하고 있으며 '88年度 開催實績은 159회에 達하고 있습니다.

勞·使·政 간담회는 成熟된 勞使關係의 定着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계속 補完하여 發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熙委員께서 相談室 職員의 資格등 勞動相談室 運營實態와 事業場 勞動相談室 設置 義務化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동부산하 41個 地方勞動官署에 勞動相談室을 運營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名의 大卒이 상의 專門相談員과 한두名의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專擔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李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產業社會에서 勞動問題는 폭주하고 있고 內容 또한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狀況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判斷되어 현재 勞動相談室 活性化方案을 수립중에 있으며 計劃이 확정되는 대로 人力補強을 비롯하여 多角的으로 勞動相談室 活性化方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事業場 勞動相談室 設置에 대하여도 李委員이 제시한 義務化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로 活性化方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最低賃金制度의 弘報에 대해서 아주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最低賃金制度의 弘報를 위하여 案內冊子 發刊配布 勞動·經營關係 월간지등 게재 放送報道하고 勞使團體의 自律的인 제도 및 地方勞動官署의 指導등 多角的인 措置를 취

하고 있습니다.

勞働部는 이런 弘報對策의 일환으로 '89年 1月14日부터 1月18日까지 最低賃金에 주로 해당하는 未婚女性 勞働者를 對象으로 最低賃金 인식정도를 調査하고 이 調査 結果를 勞使團體에 通報하여 弘報에 協調해 줄것을 要請하는 한편 地方勞働官署에서도 使用者의 주지의무를 이행토록 措置하고 勞働者들이 즐겨듣는 放送프로그램과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政府의 弘報및 제도 對策을 계속 推進하여 最低賃金制 定着에 努力하겠습니다.

李康熙委員께서 勞使紛糾 事前豫防對策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勞使問題는 勞使當事者가 相互間의 立場을 존중하는 가운데 對話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政府는 公正한 調整者의 役割을 적극 수행하면서 勞使間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나가는 데 力點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當部에서는 勞働組合의 民主的 운영과 自主的 활동을 적극 보호하면서 勞使教育을 강화하여 勞使當事者의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勞働爭議調整機構와 인력을 보강하여 급증하는 勞働爭議를 효율적으로 조정해나가는 한편 勤勞條件 脆弱事業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분규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균형된 소득분배의 實現을 위한 勞働者福祉增進施策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相洙委員님께서 質疑하신데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의 賃關에 對備하여 勞總도 가이드라인을 定하고 經總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政府도 賃金引上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능동적으로 對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89年度 賃金交渉과 관련하여 勞使間에 제시하고 있는 賃金引上率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勞使關係의 不安要因 이 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87년과 '88년의 勞使紛糾經驗은 勞使兩側의 自律的인 交渉으로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慣行을 提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政府에서는 賃金引上 가이드라인 제시등의 개입없이 勞使自律交渉慣行을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勞使關係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勞使間에 自律賃金交渉이 정착되도록 賃金統計등 賃金交渉 資料支援 共同交渉 活用指導등을 통하여 勞使自律交渉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득히 교섭이 결렬될 경우 公정한 調整者로서 適法節次에 의하여 勞使爭議를 하도록 指導할 것입니다.

또한 階層別 賃金隔差 縮小 불합리한 賃金制度改善 및 低賃金解消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李相洙委員님께서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 經濟與件에서 中小企業 도산과 관련한 休·廢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수반해서 사업장수와 근로자 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88年度 休·廢業事業場은 1,037個所이고 失職者數는 4萬 2,930名으로 把握되고 있습니다.

政府는 休·廢業으로 인한 失職者에 대하여 全國 139개의 취업알선전선망을 통하여 再就業을 斡旋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직근로자를 인근에 있는 계열사나 동일업종기업에 먼저 就業斡旋을 하고 있으며 또 轉業을 希望하는 者에 대하여는 전원 失業者雇傭 促進訓練을 이수토록하여 就業斡旋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근로자 실태는 4萬2,930名中 계열사 및 인근기업취업자가 23萬6,000餘名이 되고 전업훈련을 5,000名을 勞働部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자율취업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님께서 最近 國內의 外國人 投資企業의 休·廢業으로 근로자 集團解雇事態가 發生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對策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企業의 自由가 保障되고 있는 現 經濟體制下에서 企業이 正當한 經營上의 이유로 부득이 休·廢業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近來에 원화절상 수출감소 제조원가의 상승등 經營惡化에 기인하여 休·廢業하는 事例가 많이 發生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의 統計에 의하면 外國人 投資企業中 昨年 한해동안 休·廢業으로 投資認可

가 取消된 업체는 70個所이고 新規認可된 業體는 105個所로 集計되고 있습니다.

政府는 이와같은 休·廢業으로 인한 근로자의 失職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企業이 休·廢業으로 5人 이상의 集團解雇나 減員이 불가피할 때는 일단 1個月前에 事前 申告토록 指導하여 休·廢業의 사유가 순수한 經營上 이유로 判明되는 경우에도 事業主에 再考의 機會를 부여하고 勞使가 이해를 하고 평화리에 休·廢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失職勤勞者에 대한 각종 金品清算과 사전에 轉職訓練등 사후대책을 勞·使·政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時間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반면에 經營上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勞動運動 防害등을 目的으로 廢業하여 勞使問題를 야기한 業體에 대하여는 監督을 實施하여 法違反 事項에 대하여는 強力 依法 處理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答辯들이신 가운데 補充質疑하실 委員 안계시지요?

○李相洙委員 어제 물었던 것중에서 答辯해 주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解雇勤勞者에 대해서 徵集令狀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의 措置를 물었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勤勞基準局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송합니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荃德 勤勞基準局長 答辯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主務部處인 兵務廳 徵募局長과 전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質問도 하고 그 쪽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李委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兵役法 第46條2項1號에 의하면 主要防衛產業體에 종사하는 特別補充役인 자가 義務從事期間 5年中에 退職하거나 該當 專門分野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바로 現役兵으로 入營하거나 防衛召集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同法 第47條 1項을 보면 該當業體에서는 特別補充役인 자를 退職한 날로부터 14日이내에 本籍地 地方兵務廳에 身上變動事項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同法 施行令 第21條2項에 보면 兵務廳 本籍地 市長 郡守 등을 통하여 入營期日 30日前까지 本人에게 入營通知를 송달하여야 하도록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特別補充役인 사람이 該當業體에서 解雇가 되면 비록 雇傭의 효력에 그 解雇의 다름이 令狀執行의 停止事由가 될 수 없다는 것이 兵務廳의 의견입니다.

더 나아가서 解雇無效判決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兵役法에 의한 令狀執行이 잘못되었다는 判決이 있기 전까지는 그 行政行爲는 유효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令狀執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民事나 또는 行政訴訟에 의해서 그 是正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兵務廳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 令狀執行이 根本的으로 연기되려면 우선 解雇原因無效가 확정되고 동시에 令狀을 집행한 行政行爲가 잘못되었다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은 연기가 不可能하다는 것이 兵務廳 當務者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報告올린 바와같이 現行法上으로는 이와같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改善方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關係部處인 兵務廳과 긴밀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報告올릴 것은 실제로 이 문제가 豐山金屬에서 事例가 있습니다. 89年1月31日 勤勞者 35名이 解雇措置되고 이 중에 10名이 兵役特例者였는데 같은 날 會社側에서 10名의 解雇事實을 兵務廳에 통보했고 2月2日 兵役特例者 10名에 대해서 入營通知書가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2月10日 同 兵役特例者들은 仁川支院에 勤勞者地位保全假處分申請과 동시에 解雇無效確認訴訟을 제기를 했고 2月13日 兵務廳에는 入營延期願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2月14日 大邱高等法院에 入營通知取消 및 效力停止假處分申請을 제기했습니다만 2月18日 大邱高法에서는 入營通知取消 및 效力停止假處分申請을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한 實際的인 事例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勞勤部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勞勤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방금 報告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部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各 部處가 所管法律에 따라서 모든 行政行爲를 하기 때문에 일단 兵役에 관한 한은 兵務廳에서 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는 구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간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까 報告드린 대로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와 같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좋은 改善方案이 나오도록 긴밀히 협조를 해보겠다는 報告를 올리겠읍니다.

○李相洙委員 당장 지금 며칠있으면 入營을 해야 될 勤勞者가 생기는데 언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인가요?

○勞勤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이 國會가 끝나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서 실제로 가서 協議를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改善方案에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이 國會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바로 가서 協議를 직접 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현안으로 되어 있고 防衛産業體가 많고 하나까... 그렇다면 다시 물어 보겠읍니다.

그러면 兵役法쪽은 놔두고 그 쪽은 이따가 관련시켜서 물겠는데 먼저 解雇가 無效이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溯及的으로 無效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溯及的으로 無效라는 것은 勤勞關係가 解雇 당시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읍니까?

단순히 取消事由가 있어 가지고 取消되는 경우라면 현재 取消을 시킬 당시에 그 행위는 일응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겠지만 無效라는 것은 당연 無效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 無效行爲라는 것은 있지 않고 無效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만일에 解雇가 無效가 되어 가지고 溯及해서 만일 無效가 인정이 되어서 勤勞關係가 존재한다면 바꾸어 얘기하면 防衛産業體

의 勤勞者의 지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勞勤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그렇지요.

○李相洙委員 그러면 防衛産業體 勤勞者의 地位가 있는 사람은 特例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勞勤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그렇지요.

○李相洙委員 그러면 이쪽 法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勤勞者로서 계속 地位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읍니까?

○勞勤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제가 兵務廳 徵募局長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 말씀이 아까 報告한대로 勞勤關係는 그럴지 모르지만 일단 兵役法上의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요건이 法上에 족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報告를 드릴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절대로 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집행한 令狀에 대해서는 그 令狀執行自體가 잘못되었다는 어떤 권위있는 기관에서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대담이었읍니다.

바로 저도 李相洙委員님이 저한테 물으신 그 얘기를 그대로 兵務廳 當局者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물겠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 신문에서 2月14日字인가 大邱高等法院 特別部에서 徵集令狀效力停止假處分申請했던 勤勞者가 기각되어서 敗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마치 지금 현재 勤勞者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解雇라도 解雇事由의 정도에 따라서는 상이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의 仁勞會事件에서 똑같은 判事가 한 사람은 令狀을 기각했는데 그 다음에 令狀을 인정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補完證據가 없읍니다. 그런데도 令狀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한 裁判部의 判斷이 전체 法解釋이나 執行에 絶對的인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제 決定內容을 보고 判斷을 그

렇게 강하게 兵務廳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설사 兵務廳에서 입장이 이에 있다고 치고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兵力充員人員이 부족해가지고 바로 兵役該當者가 되면 바로 兵役을 요구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雇傭를 당하자 즉시 이런 徵集要求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勤勞者 대부분이 4年10個月 4年8個月 4年3個月 이렇게 勤務해가지고 몇달만 더 勤務하면은 사실 兵役特例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形式的으로 機械的으로 法을 집행하는 것이 옳을지 만일 兵務廳에서 4年10個月을 勤務해가지고 2個月만 더 勤務하면 特例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解雇가 問題點이 있어서 法에 계류되어 있고 이렇다면 꼭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畝狀을 청구하는 것이 옳은지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해서 關係機關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勞動部가 指導力을 발휘해가지고 國防部에 지금 이 事件을 解雇 당한지도 한달도 안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4年以上 勤務한 사람들이고 또 解雇가 有效인가 無效인가 알 수가 없고 만일 解雇가 無效라면 이 사람들은 치명적인 不利益을 당합니다. 解雇가 만일 無效라고 하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고 2個月만 더 勤務하면 兵役惠澤을 받는데 지금 만일 軍隊에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兵務廳이 그렇게 유독 우리나라의 兵役者가 그렇게 없습니까? 꼭 이 사람만 불러가지고 畝狀을 발부하느냐 政府가 한마디로 勞動運動을 탄압하기 위해서 特定財閥하고 결탁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兵務廳부터 자제하라는 이런 요구 못합니까? 法을 떠나서 말입니다.

長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제가 答辯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李相洙委員님의 勤勞者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정어린 말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여러가지 사항을 가지고 勤勞者 개개인의 勤務年數와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자신도 가슴 아파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李相洙委員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關係當局과 제가 협의를 해서 報告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徵集의 대상이 되어도 여러가지 사유를 제시를 해가지고 연기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정말 억울하게 解雇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4年以上 勤務한 사람들이고 만일에 이 사람들의 徵集이 집행되어 버리면 치명적인 不利益을 당합니다. 勞動部에서 정말 指導力을 발휘해가지고 國防部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만큼은 책임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長官님! 책임지고 처리해 줄 수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노력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럼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믿고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新民主共和黨所屬 金鎔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鎔采委員** 勞動部 業務報告 冊子 88主要 業務實績 8「페이지」에 보면 勞使關係 發展指導에 있어서 勞使紛糾가 87年度에 3,749件에서 88년에는 1,873件으로 줄어든 것으로 報告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數字上으로 비교를 했을 때에 勞使紛糾가 많이 완화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87年과 88年 資料를 對比했을 때 첫째 職場閉鎖가 5件에서 244件으로 45倍가 증가했고 둘째로는 勞使紛糾로 인한 生産差 跌額이 2兆7,000億원에서 3兆2,000億원으로 約 5,000億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輸出에 있어서는 5億3,000萬弗에서 7億3,000萬弗로 約 2億弗의 輸出減少가 더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數字上으로는 勞使紛糾가 상당히 줄어든 것처럼 되었지만 그 내용과 질면에

서는 대단히 그 勞使紛糾로 인한 損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5倍 이런 정도로 件
數가 많아질 뿐더러 그 勞使紛糾로 인한
여러가지 國家的인 損失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逆算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業務實績報告에 의하면 대단
히 좋아진 것처럼 87年보다 88年이 대단히
좋아졌다 하는 식으로 勞動部에서는 평가한
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된 평가가
아니냐 長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
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勞使紛糾의
期間만 보더라도 87年 平均 3日에서 5日보
다 5日에서 7日이 더 길어진 平均 10日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期間이 長期化되었다 하
는 얘기에요. 그래서 長期化되었으면서도 大
型化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實績評價를 한 것을
보면 거꾸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러
한 거꾸로 평가한 것으로 인해서 勞動部가
지금 現 勞使問題를 다룬다고 하면은 이것
이 제대로 다루어졌느냐 이것입니다. 長官
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뿐만 아니라 現代重工業勤勞者暴行事件에서
는 會社側의 개입과 公權力의 묵인 그리고
방조를 한 사실이 여러가지 정황으로서 드
러나고 있고 또 豐山金屬 安康工場의 무차
별 公權力 投入過程에서도 勞動部가 主務部
뿐인데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완전히
소외되어 버렸어요. 勞動部가 철저히 개입
해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캐
고 이런 일이 벌어짐직한 것을 事前에 알
아서 예방하는 그런 措置를 할 생각도 물
론 안했고 완전히 勞動部가 이런 公權力
行使에 있어서 전혀 소외된채 있었다 그럼
으로 인해서 勞動部라고 하는 것이 國民에
대한 信賴度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
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勞動行政이
과연 있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國民과 더
불어서 여저지기 때문에 한심스러운 생각마
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全般的인 勞使紛糾의 양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勞動關係事件에 있어서 勞動
部가 아까처럼 소외되거나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과연 勞動部長

官은 앞으로 이러한 무기력하고 전혀 國民
이 信賴할 수 없을 정도로 勞動行政이 勞使
紛糾에 전혀 아무 도움이 안되는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 勞動部長官은 勞動行政을
끌고 가실 작정이냐 基本的으로 대단히 중
요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 나라 政府는 있지만 勞動部는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 國民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對策이 과연 어떤
것이냐 綜合的인 이 문제에 대한 對策을
세우지 않고 이런 날로 長期化 되어가고
있고 大型化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國
家が 今年에도 3,000億원이나 貿易赤字를 보
는 史上類例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生産性이 떨어지고 있고 많은 勤勞者
들이 生業에 급급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언제까지나 보고만 계실 작정이냐 하는 말
입니다. 무슨 對策이 있으면 속시원하게 答
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關係部處 共同으
로 業種別 紛糾要因 深層分析 및 制度改善을
위해서 綜合對策을 마련 이렇게 좋은 말로
써있어요.

무엇을 關係部處 共同으로 業種別 紛糾要
因을 深層分析을 하겠다는 것인지 있으면
내와 보시오.

그리고 制度改善 綜合對策 마련했다는데
무슨 制度를 어떻게 改善했는지 나와봐요.

이렇게 未聞으로 羅列式으로 해서 國會에
와서 적당히 어물쩍하고 報告를 하는 태도
는 지양해야 됩니다.

關係部處 어느 部處하고 무엇을 어떻게
共同으로 業種別 分析을 했으며 그것도 아
주 深層分析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制度
를 어떻게 改善해서 對處하는 方案이 나왔
는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한다는 것이 밤낮 治安次元에서
過勞勞使紛爭이 났을때 그것을 어떻게 하든
지 公權力으로 힘으로 밀어부치고 막아내는
그것이나 밤낮 모여서 여러분들이 特別對策
세우는 것처럼 했지 根本的인 對策을 세운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國會 現
況報告에다가 그럴듯 하게 써서 무슨 마치
좋은 對策이라도 세워가지고 勞使紛糾가 금
방 줄어들고 해결되는 것처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뿐이 아니고 經濟部處 經濟企劃院 商工部 建設部 各部處 그 다음에 具體的인 對策을 세우려면 治安關係部處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勞動部長官 혼자 안되면 政府가 總動員해가지고 總理 이하 밤을 새워서 各部處長官이 여기에 대한 진지한 對策을 세워서 이 엄청난 벌써 언제부터 일어난 것이예요? 87年 88年 今年 3년에 걸쳐서 엄청난 勞使紛糾에 의해 重病을 앓고 있는 나라의 全體的인 社會問題를 무엇인가 根本的인 對策을 세울만한 열의가 勞動部長官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大統領께 건의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 勞使問題緊急 對策委員會 總理가 委員長 해가지고 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勞動部長官이 주관 이 되어서 根本的인 對策 原因分析 해가지고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制度上에 문제가 있으면 制度를 고치고 使用者에 문제가 있으면 經濟企劃院長官을 動員해서라도 使用者가 根本的으로 不當勞動行爲를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절실하게 그들이 느껴서 事業主들이 紛爭現場에 나가가지고 진지하게 勞動者들과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협의 를 해서 자기 事業場을 勞動紛爭으로부터 건지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주는 이런 적극적인 어떤 計劃과 對策 이런 것을 마련하 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國家의 진운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社會安定을 바라는 대 다수 國民들 國家의 진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대다수 國民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勞動部長官의 역할이 기대 됩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크게 보아서 美國과 日本式의 企業別 交渉과 美國과 日本式 企業別 交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 다음에 西歐 先進國家들이 취하고 있는 產業別 業種別 職能別 團體交渉의 長短點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과거 先進國으로 가는 나라들이 다 이러한 열병을 앓았어요. 가까운 日本이 60年代에 열병을 앓았던 것을 참조도 해보고

조감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더듬어 가지고 많은 資料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 참고를 하고 西歐諸國들이 앓았던 勞使問題의 열병을 여러분들이 공부 를 하고 연구를 해서 汎政府次元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勞動部長官 혼자 힘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혼자 힘으로 안돼요.

그래서 各國의 여러 勞使問題 여러가지 紛爭의 해결의 방법 비법을 좀 공부도 하 시고 해서 그야말로 진지한 對策을 수립해 가지고 오늘의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 사 하는 말씀과 그에 대한 長官의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진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地方自治制를 해야 되는데 勞動行政에 있어서도 地方化가 되어야 되겠다고 地方自治를 했을 때 과연 勞動行政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對策마련이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 구상이 있다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分權化가 되어야 되고 地方化가 되어야 되고 勞動行政은 中央에서는 綜合調整機能과 金融機能만 가지고 그래서 그 機能을 향상을 시키고 일선 勞動行政에 있어서의 現場處理能力을 높여줘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머리만 잔뜩 있지 勞動行政의 손발이 지금 현재 갖춰 있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勞動行政을 이 어려운 產業社會에서 제대로 펴나가겠음 니까 내가 볼 때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빨리 하셔서 地方化時代에 맞는 기틀이 지금부터 착실하게 잘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대강 지금 제가 지적한 바가 基本的인 앞으로 우리나라의 勞使問題 해결에 있어서의 要諦라고 보는 줄거리를 말씀 드렸는데 長官은 同僚委員이시고 勞動委員會에 계시다가 長官되신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로 어떻게 하면 勞動行政을 제대로 해나가느냐 하는 연구도 하 시고 걱정도 晝夜로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중차대한 時點에 그

야말로 勞動行政을 맡게 된 長官은 歷史的인 罪人이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라도 정말 참 밤잠 안자고서라도 밑의 部下職員들을 독려해서 그야말로 이 나라의 어려운 難題를 풀어나가는데 主役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長官을 보필하고 있는 여러 局長 課長 係長 여러분들 다 와 계신데 勞動部가 생긴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마는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機能을 제대로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허둥지둥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공부좀 더 하시고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長官을 보필 못하면 결국 長官은 무능한 長官 되지 않습니까? 무능한 長官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가 절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長官 보필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所屬 柳昇珪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昇珪委員 어제 많은 委員들이 많은 質問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고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난 1月13日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린 勞動委員會에서 신애전자문제에 대해서 長官께서는 분명히 答辯을 하셨습니다.

현재 신애전자의 勞使紛糾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먼저 一括質問하지 않고 바로바로 答辯을 듣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1月13日 字 첫 勞動委員會에서 제가 柳昇珪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신애전자에 대해서 業主를 不當勞動行爲로 拘束 告發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애전자와 上級團體인 金屬勞聯과 또 현재 해고되었던 勤勞者 組合長들과 실질적으로 다시 지금 대화를 再開함으로써 대화를 하는 기간동안은 그것을 유예시켜 가지고 지금 거의 勞使間에 合意點에도달되어가고 있다는 報告를 받았습니다.

제가 방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擔當

線責任者인 冠岳所長을 불러서 이번 週內에 終結이 되도록 조정을 하라는 지시를 조금 전에 하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週內에 終結이 되고 行政措置는 行政措置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柳昇珪委員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동안에 1月13日 이후에 勞動部가 仲裁를 해서 金屬勞聯 勞總 신애勞使當事者들이 아마 4·5차례의 協商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企業主의 高壓的인 자세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안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제 그저께와 같은 경우는 勞動地方廳長이 人格的으로 모욕당하는 그런 과정까지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제가 報告듣기에는 오늘도 제가 金屬勞組委員長을 제 房에서 午前중에 만났는데 그 진행과정이 거의 다 해결이 되고 한두가지 문제때문에 진행이 안된다는 金屬勞組委員長의 말씀을 듣고 제가 방금 報告드릴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勞動者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與件바탕을 造成해 주는 것이 어떤 措置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우선을 前題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週內에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柳委員님께 다시 報告를 드리고 오늘도 제가 이 金屬勞聯委員長과 勞總委員長의 訪問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한 의논을 했고 그래서 방금 冠岳所長을 불러서 그에 대한 措置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柳昇珪委員 그래서 政府의 仲裁로 勞使協商을 하면서 이 勞動者側은 처음에 14個案을 제시했습니까마는 양보하고 양보하다가 한 가지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正常出勤을 해서 再操業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무척 양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企業人은 60名 會員을 동시에 復職시킨다는 그 약속을 履行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애전자社長을 拘束하게 된다면 産業社會에 어떤 영향이 됩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저는 産業社會의 어떤 영향의 문제보다도 궁극적으로 行政措置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不當勞動行爲에 대해서

먼저 國會에서도 報告드렸읍니다마는 原案에 대한 해결은 해결대로 하고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것은 行政措置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柳昇珪委員 현재까지 우리나라 勞動行政이 항상 힘없는 勞動者만 拘束시키고 處罰하고 企業主는 處罰해 보아야 罰金 몇 푼 내는 것... 돈있는 사람 處罰해 보아야 겁 안남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저도 柳委員님 말씀에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勞動行政을 맡은 이후에 여러가지 그런 문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忠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勞動者들이 지금 現場에서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行政措置는 할 것은 하고 또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補充調査도 제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柳昇珪委員 이제는 惡德業主에게는 가능한 대로 體刑으로 다스릴 수 있는 處罰規定을 강화해서 그들이 人格의으로 또 그런 苦行을 겪어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柳昇珪委員 그러면 언제까지면 해결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신애전자는 이번 土曜日까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柳昇珪委員 長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長官께서 1月15일에 말씀드린 無勞動 無賃金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資料要請을 했습니다. 그래서 改正되기 이전 勞動組合法 第24條 2項의 條項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組合員들이 자기의 權益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給與에서 내는 이 組合費중에 福祉厚生基金으로 쓰도록 法에 明示되어 있어요. 이 福祉厚生事業은 政府나 企業主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組合員들이 낸 組合費에서 福祉厚生事業을 합니까? 적게는 10%에서 많

게는 5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政府가 勞動組合이 自律의으로 成長할 수 있는 길을 전부 法으로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福祉厚生事業費 한 50% 쓰고 爭議基金을 어떻게 積立합니까? 勞動組合이 爭議基金을 積立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한 것이 바로 政府입니다. 그러니까 無勞動 無賃金에 대해서는 좀 合理的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無勞動 無賃金을 계속 주장하시려면 그 동안에 組合費 50%를 福祉事業費에 썼는데 그것을 政府가 전부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勞動組合에서 爭議基金을 積立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中小企業같은 데는 勞使紛糾가 일어나게 되면 休業 廢業으로 딱 대처하고 財閥企業에서는 無勞動 無賃金原則을 固守하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勞動者들이 權利를 주장하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政府에서는 爭議基金積立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組合에서 基金造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長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勞動委員會 委員으로 있을 때 「스웨덴」에 가서 여러가지 勞動組合의 福祉問題라든가 爭議에 대한 문제를 들었을 때 罷業期間 동안에 爭議調整基金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罷業期間동안에 勤勞者들에게 그런 惠澤을 주는 것을 보고 저 자신 아주 기쁘게 아주 대단히 좋은 방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委員님이 말씀하신 衷情을 충분히 제가 알고 또 勤勞者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綜合的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柳昇珪委員 本委員 생각으로는 「스웨덴」에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저기는 數10年前부터 勞動組合活動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爭議基金이 많이 積立할 수 있었고 爭議基金이 많이 積立되어 있지만 우리는 法으로 爭議基金을 積立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닙니까? 그 爭議基金을 積立하려고 하면 福祉厚生事業에 쓰라고 하고 어떻게 勞動者가 자기의 勞動을 팔아가고 받고

賃金에서 내는 組合費를 자기들의 厚生福祉事業에 씁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勞動政策의 오류이기 때문에 政府가 책임을 지고 이 爭議基金問題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無勞動 無賃金方針을 撤回하셔야 합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은 無勞動 無賃金에 대한 基本原則은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柳昇珪委員** 그것은 制度的으로 政府에서 爭議基金을 積立하도록 政策的으로 行政指導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企業을 위해서 福祉厚生事業費로 쓰도록 法에 明示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主務長官께서는 無勞動 無賃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撤回하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基本原則은 撤回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綜合的으로 검토해서 다시...

○**柳昇珪委員** 撤回 안하게 되면 계속 固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예.

○**柳昇珪委員** 그러면 이 勞動組合法 24條 2項에 의해서 勞動組合費로 사용한 福祉厚生基金을 반환해 주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福祉厚生基金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組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勤勞者들이 전부 혜택을 會社에서 어떤 施設로 惠澤을 보는 것이 아니고 勤勞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廣義로 해석하면 그런 문채도 실제로 積立을 해서 그런 데에 쓸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福祉厚生事業의 돈이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柳昇珪委員** 그렇게 좋게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이 組合費가 財政의 壓迫을 좀 받아야만 勞動爭議라든가 勤勞團體가 여러가지 면에서 위축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 資金蓄積을 못하기 위해서 이런 制度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法을 만들도록 政府에서 強制規定을 만든 것이예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런데 87年度에서 그 法을 없앴다고 합니다. 없앴고 또 이 때까지 福祉厚生事業의...

○**柳昇珪委員** 87年度에 없앤 것하고 옛날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1年동안 爭議基金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組合費의 한 2:30%를 한 10餘年정도 積立해야만 최소한 爭議가 한두달동안 되었을 적에는 그 組合員의 生活費를 支給할 수 있는 基金이 造成됩니다.

無勞動 無賃金原則을 撤回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 勞動組合費에서 사용한 福祉基金에 대해서는 政府에서 각 勞組에 반환해 주어야 된다 물론 돈의 價値는 현재 수준에 맞추어서 支給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勞動部에서 無賃金 無勞動에 대한 방침을 固守할 수가 있지 勞動組合에서 爭議基金을 積立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박탈하고 오히려 그 부분을 企業主가 사용할 福祉事業基金 쓰게 하고 無勞動 無賃金이라고 하게 되면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福祉厚生事業費는 勞動組合費에서 걷어가지고 결과적으로 組合員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더 그런 좋은 制度가 있는 것도 보고 했으니까 綜合的으로 檢討하겠습니다.

○**柳昇珪委員** 그러면 爭議基金積立에 관해서 勞動部가 模範案을 내서 앞으로 行政指導를 해나가는데 어떤 案이 가장 合理的이다 그리고 短時間에 爭議基金을 積立할 수 있는 그런 模範代案을 만드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한번 연구해 가지고 報告드리겠습니다.

○**柳昇珪委員** 연구가 10년도 갈 수도 있고 20年 갈 수도 있는데 어느정도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柳委員님! 國會 常任委員會가 있는데 제가 자주 그렇게 10年 20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柳昇珪委員** 아니 이것이 굉장히 懸案이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고 하면 이번에 委員長님 모시고 스웨덴]에 가서 처음 勞動委員으로서 가서 느낀 것중에 사실은 罷業期間동안에 俸給을 주는 勞動組合費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명있었고 이 制度에 대한 것을 사실은...

○柳昇珪委員 가능한 한 한두달안에 原則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여러 委員들이 質問했지만 答辯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再質問하겠습니다.

病院勞聯과 醫聯勞聯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病院勞聯規約 構成 및 組織對象에 관한 부분을 複寫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勞動部에서 提出했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局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柳昇珪委員 알겠습니다. 構成 및 組織對象에 보게 되면 土木 建設 料食 理·美容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石炭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織物도 들어가고 「코크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코크스」業體가 聯合勞聯에 들어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化學勞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織物을 전부 纖維勞組가 있고 石炭은 鑛山勞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構成 및 組織對象에다 들어가 있는 이런 業體는 별도로 다 옛날 產別勞聯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醫療에 관한 부분만은 왜 病院勞聯이 自體的으로 構成될 수 없는 것입니까?

어제 말씀할 적에 분명히 規約에 의해서 規約을 우선 改正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解散決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병원만 꼭 이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고무勞聯規約을 보면 그러면 고무勞聯도 化學勞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무勞聯은 宣言綱領 및 規約을 찬동하는 전국의 고무산업 및 그 관련산업의 勞動組合으로 조직하여 고무노련을 유일한 단일 勞動組織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勞聯은 化學에서 빠져나오면서

단일 勞動組織體로 한다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고무勞聯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病院勞聯에 관해서 확고한 우리 委員들이 이해할 수 있는 答辯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柳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聯合勞聯에는 여러가지 產業分野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써 醫療事業分野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病院勞聯이 組織重複이라는 문제때문에 정식으로 產別勞聯으로 設立申告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무勞聯과 化學勞聯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勞動組合法 第3條 但書 5號가 規約상에 組織이 중복되지 못하도록 規定이 된 것이 지난 87年11月 法改正 때 새로 들어간 조항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產別勞聯間의 組織範圍는 어디까지나 產別勞聯의 自律的인 판단하에 범위를 정했고 또 그 후에...

○柳昇珪委員 또 거짓말합니다.

87年度에 法改正 이전에는 自律的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고무勞聯은 언제 되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規約중복이 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새로 規約중복이 되면 勞動組合이 아니다 하는 規定이 들어간 것이 87年 法改正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產別勞聯의 規約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그대로 인정되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러한 產別間의 組織管轄의 분쟁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았고 저희 勞動行政機關에서는 產別勞聯間의 組織管轄 분쟁때문에 항상 휘말려서 상당히 오해를 받은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產別勞聯을 총괄하는 勞總에서 어떤 組織管轄機能을 가지고 제대로 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청탁을 저희가 勞總에 대해서 수차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87年11月 法改正할 때 勞動組合法 3條

但書 5號를 改正하면서 규약상 組織이 중복되는 경우는 勞動組合으로 볼 수 없다는게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産別勞聯의 규약이 改正되도록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柳昇珪委員 알았습니다. 좀 성의를 갖고 自律的으로 勞組活動이 가능하도록 勞動行政을 해주세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柳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聯合勞聯에서 분리 결의를 해주고 정식으로 病院勞聯이 출범을 했으면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柳昇珪委員 지금 여기 규약에 적힌 것은 구성 및 組織對象이 60個 業種이 넘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기타 他 勞聯 및 産別에 속하지 않은 職種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예 勞總을 없애고 聯合勞聯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또 지금 外國人企業體의 勞使紛糾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外國人銀行에서 昨年 1年間 國內에서 벌은 돈이 1,159億인가 됩니다. 外國人 業體들이 國內에 와서 상당한 이익을 本國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우리 國內産業의 勞使紛糾도 심각하지만 外國企業體의 경우에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슈퍼리더스」같은 경우에는 위장폐업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폐업선언하고 떠나버렸고 230名 勞動者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勞動部에서 여러가지 면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外國人業者들이 그렇습니다. 특하면 철수해 버린다 하는 식으로 勤勞者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外國人業體라고 해서 폐업하고 떠나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떠났을 때 고용대책문제는 勞動部가 미리 강구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外國人企業도 國內企業과 똑같습니다. 제반 法節次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에 폐업이 생길 경우에는 事前 申告하도록 되어 있고 폐업으로 인한 遊休人員에 대해서는 職業斡旋을 해주

는 기능을 勞動部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柳昇珪委員 앞으로 外國人企業에 대해서 休廢業 事例가 발생되면 政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國內企業의 休廢業과 똑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 취급하는 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特例法이 있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폐지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勞使問題에 관한 限 勞動法에 관한 限 國內企業과 같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柳昇珪委員 그러면 外國人들이 國內에 와서 우리나라 勞動者들의 勞動力을 착취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다 가져가면 우리는 썩데기만 남아도 됩니까? 근본적인 대책도 政府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슈퍼리더스」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취업을 할 길이 없습니다. 國內같은데 政府에서 중재해 가지고 정상 가동시키도록 권장할 방법이 있겠지만 떠나버렸으니까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최소한 企業主가 廢業하고 떠났을 직에는 勞動組合이 自律的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政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代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柳昇珪委員 勞動組合에서 전문 경영인을 데려다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政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실제로 外國人 企業體의 이런 횡포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땅을 사고 건물지은 게 있습니까? 남의 건물 전세대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資料請求한 것인데 「星重工業 勞組結成」 당시 會議錄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發言한 사람 이름하고 勞動組合 명칭하고 폐회한 이후에 議長 司會... 그 부분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바로 얘기하게 되면 미리 會議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써넣은 것입

니다. 虛偽報告書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柳昇珪委員**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司會議長**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 發言한 사람 이름 그 欄만 짝씩 빼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잉크로 써넣었습니다. 그런데 行政官廳에서 이런 會議錄도 제대로 검토 안해보고 設立申告證 교부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金屬勞動組合聯盟 三星重工業勞動組合 그랬는데 聯盟에 가입한 사실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組合費에 대한 率도 안나와 있어요. 組合費를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고 組合費 각출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團體協約도 없고 勞使交涉한 실적도 없고 이것만 봐도 三星勞組는 幽靈勞組라는 것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屬勞動組合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데 勞動組合 명칭에는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 三星重工業勞動組合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입 聯合團體의 명칭에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會議錄도 사전에 다 조작되고 設立申告證을 넣기 위해서 첨부서류니까 안만들 수는 없고 이름만 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런 서류를 받고 어떻게 設立申告證을 교부를 해주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柳委員님께서 요구하신 資料를 오늘 아침에 公文을 발송해 놓고 왔습니다. 現 組合員의 명단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에 가입원서를 냈는지 사본 또는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에 義務金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지 사본 또 組合費 징수실적이 있는지 징수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징수비율은 얼마인지 등등을 오늘 아침에 慶尙南道에 公文을 발송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勞動組合法 第30條의 규정에 따라서 行政官廳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組合의 경리상황 기타 서류를 제출받게 되어 있으니 그 규정에 의해서 慶尙南道에서 조사를 해서 본부에 제출해라 이렇게 긴급지시를 해놓고 왔습니다. 나중에 報告드리도록...

○**柳昇珪委員** 이 당시에 김무원勞組에서 設立申告書 교부신청을 慶南道廳에 했지요? 申告書 접수받은 사람이 누구고 또 決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職務遺棄 아닙니까? 勞動部에서 문책할 의사는 없습니까? 책임을 물을 의사는 안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行政處理를 하니가로 勞使紛糾가 장기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왜 勞總에 와가지고 100餘日이 넘도록 농성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行政의 책임입니다. 재벌 앞에는 行政도 맥을 못춘다는 바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慶尙南道 道知事를 비롯한 이 勞動行政에 관련된 사람들의 문책을 촉구하면서 다음 質問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李相洙委員께서 말씀하셨지만 防衛産業 勞動部 해고자들 兵役問題입니다. 勞動組合法 3條4項에 解雇效力을 다두고 있는 者는 勤勞者가 아닌 者로 볼 수 없다 이렇게 組合法에 명시되어 있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勤勞基準局長입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柳昇珪委員** 그런데 지금 解雇無效訴訟중인 사람은 勤勞者입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勞動組合法 3條4項에 보면 쪽 풀이를 해놓고 그러나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는데 第4號에 勤勞者가 아닌 者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인데 이 경우에도 다만 解雇의 效力을 다두고 있는 者를 勤勞者가 아닌 者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해서 이것은 勞動組合 定義와 관련되기 때문에...

○**柳昇珪委員** 그 組合員資格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까?

그 條文이 組合員資格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柳昇珪委員** 말도 안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쉽게 例를 듭니다.

재산싸움이 붙었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에 누가 이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解雇無效訴訟한 勤勞者들이 재판에서 일길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軍에서 다시 데려다 취업시킬 것입니까? 일단 法院判決이 나온 이후에 징집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勞動部가 과거에 佐社部傘下 勞動廳으로 있다가 勞動部로 독립된 지 불과 8年밖에 안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勞動部 권위가 다른 部處에 비해서 힘이 없다는 것은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8年정도 되었으면 全國 勞動者가 얼마입니까? 이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勞動部인데...

○**勞動部長官 張永喆** 政策的인 문제라서 제가 答辯드리겠습니까마는 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 보면 論理的으로 공한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柳昇珪委員 長官!** 釜山地方兵務廳에서 같은 조건으로 입영연기신청을 했는데 三星重工業 勞動者들은 기각을 하고 주식회사 통일의 解雇勤勞者들은 입영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實務的인 答辯은 局長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까 李相濬委員께서 質疑하신 대로 防産業體勤勞者들의 兵役問題에 대해서는 國防部하고 진지하게 의논하겠습니다.

○**柳昇珪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入營令狀이 발부가 되었습니까마는 國防部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일단 解雇無效確定判決이 날 때까지는 유보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李委員님이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이 사람들 금방 데려가야 國防에 꼭 필요한 그런 소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예. 잘 알겠습니다.

○**柳昇珪委員** 그 다음에 資料에 보니까 産業災害 직간접 損失額이 1兆4,850億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鑛業部分이 2,880億이 됩니다. 그런데 石炭 總 賣出額이 9,600億쯤 됩니다. 그러면 石炭鑛業災害로 인해서 직간접 損失額이 總 賣出의 30%線입니다.

물론 작업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不合理的한 都給制가 바로 이 災害를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鑛山勤勞者의 都給制賃金은 과거 日帝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력착취를 위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는데 全 産業에서 적용하는 것이 탄광노동자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行政指導를 통해서 賃金制度가 개선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災害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經濟的 損失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한가지 「택시」社納金制를 폐지해가지고 完全월급제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택시」도 勞使問題가 극렬한데 「타코메타」기도 달고 이래서 기사를 의심하기 전에 신뢰감으로 勞使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完全월급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代案도 勞動部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年度 당시의 淨化問題입니다. 80年度 淨化때 많은 勞動者와 勞組幹部가 不當解雇 淨化措置 三清教育 등으로 인해가지고 극심한 생활고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國會에서 公務員 및 國營企業從業者들은 명예회복문제라든가 復權問題 補償問題가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습니까마는 유독 勞動者와 勞組幹部의 문제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29名 정도가 되는데 물론 629名중에는 비록 勞組幹部는 淨化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淨化가 된 사람이 김영한外 135名 三清教育이 임재수外 5名 淨化解雇가 이춘선外 86名 合同搜查에서 잡아가 가지고 고문을 해 가지고 강제로 사표낸 사람이 11名 地域支部解散으로 인해서 解雇된 사람들이 393名입니다.

실지로 이 사람들도 人權을 회복해야 됩니다.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補償도 받아야 되고 복직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勞動部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柳委員님이 두가지 전체적인 문제중에 報告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石炭問題에 대해서는 어느 분보다도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都給問題에 대한 여러가지 貨金構造的인 문제에 대해서는 動資部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貨金策定 管理問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택시」勞使紛糾도 지난해 勞使紛糾중의 43%중의 38%가 「택시」勞使問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關係部處와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서 柳委員님이 정말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 勞動行政에 關係部處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報告드리고 本會議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柳委員께서 強制解職된 勞組員에 대한 문제에 質疑해 주셔서 저희들은 答辯을 했음니다마는 항상 解職勤勞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勞組 任職員과 所屬職場에서 함께 사퇴토록 한 產別勞組委員會. 열두분에 대해서는 事案에 따라서 보상등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중에 政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解職公職者와 같이 준해서 협의를 하고 나머지 事案은 關係企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人員數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었음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國會때도 말씀이 계시고 委員님도 말씀이 계시고 請願도 들어 왔고 또 勞動部에도 그런 진정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명단에 대해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產別勞組委員長 열두분은 勞動部에서 監査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분은 勞總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勞總에서 그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면 앞으로 韓國勞總에서 명단 나오는 것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事案에 따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柳昇珪委員 國保委淨化指針에 의해서 淨化가 이루어질때 保安隊의 勞動部勞總擔當 이 봉락 勞動部에 오래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주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勞總에서는 자기

반대파 제거에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입니까? 이것은 政府의 방침이었으니까 政府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명예회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앞으로 勞總하고 명단이 나오는데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李仁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일괄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柳昇珪委員님께서도 外國人企業에 관한 問題點에 관해서 質問을 했는데 우선 外國人會社 그러니까 外國人資本이 50%이상이 되는 회사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外國人會社의 勞使紛糾에 관해서 지난해 駐韓 濠洲系 銀行인 「웨스트팩」銀行 罷業 그리고 駐韓外國系銀行의 勞使紛糾 西北航空社 「라이너」生命保險의 勞使紛糾에 있어서 今年初에는 IBM 「모터롤라 코리아」의 勞使紛糾가 있었고 현재도 「슈어트호덕츠」그 다음에 US 「마그네틱」 「알라코」保險등 6個業體가 제기상태에 있고 마산의 한국T.C 「슈미다」 군포의 TND등에서 분류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현재 駐韓外國人會社의 수가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勞動組合이 있는 회사의 수는 얼마가 되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駐韓外國人會社의 勞使紛糾에 있어서 使用者에 의한 勤勞者의 권리침해의 주된 類型이 어떤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自國民과 韓國人의 人事 給與上의 차별대우 또 지능적인 勞組 파괴행위 파업시에 「호텔」이나 여관등 다른 장소로 서류를 옮겨 가지고 조업을 하거나 勞組員과 非勞組員의 二元的인 人事管理體制 등을 통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勞組를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政府에서는 그러한 탄압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했으면 어떤 것인지 答辯해 주시고

세번째는 駐韓外國人會社를 상대로 貨金이라든지 기타 勤勞條件 등에 있어서 內外國人

差別待遇 또는 勤勞者彈壓事例에 대해서 精密勤勞監督을 실시한 일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 지금 駐韓美軍에 근무하는 韓國人勤勞者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駐韓美軍에 의해서 韓國人勤勞者가 不當解雇된 실태를 조사해 보거나 또는 그 자료가 있는지 駐韓美軍內에 근무하는 韓國人勤勞者의 法的地位에 관해서 보면 韓美行政協定 17條에 보면 本條는 美國軍隊가 雇用主로서 韓國안에서 韓國人을 고용할 경우 그 고용원에 대한 대우는 원칙적으로 韓國勞動關係法에 따라 규제한다. 그러나 美軍은 國際法上 國家機關의 하나로서 勞動關係에 있어서 韓國法廷이나 勞動委員會의 司法的規定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軍事目的 수행을 위해서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이래 가지고 駐韓美軍當局에서 자기를 편리한 대로 韓國人勤勞者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韓國人勤勞者의 法的地位가 취약한 상태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韓美行政協定上의 불리한 조항을 개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지 이 점에 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令培委員長, 盧仁煥幹事와 司會交代)

다음에 團體交涉 및 爭議와 관련한 몇 가지 問題點에 관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勞使協商實態를 보면 勞組側의 交涉委員이 團體協約을 調印한 후에 그 결과를 다시 組合員總會에 부쳐 가지고 追認을 받는 방식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交涉委員이 署名捺印한 團體協約案이 組合員總會에서 否決이 되어 가지고 紛糾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交涉委員한테 권을 위임해서 交涉委員이 충분히 사전에 組合員들의 뜻을 받들어서 團體協約案이 체결이 되면 일단은 그것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지금 勞使協商的 관행은 그렇지 못하고 또 그렇지 못한 데에 큰 紛糾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改善할 수 있는 政策的인 方案은 마련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現行勞組爭議調整法에 의하면 勞組가 罷業을 하려면 組合員總會에 비밀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의 公正性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勞動部는 大統領令이라든지 또는 勞動部의 規則같은 것을 制定해 가지고 勞使가 각각 위임하는 公正한 第3者 上級聯合團體 所屬員이라든지로 하여금 公正하게 罷業與否에 관한 組合員의 비밀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組合員 다수의 참다운 의사에 따라서만 罷業與否가 결정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에 관한 어떤 계획같은 것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豊山金屬紛糾를 現地에 가서 보았는데 이 豊山金屬이 큰 工場이 내군데 各地域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企業이 수개의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보면 勞動組合長은 어느 한 支部에 속해 있어서 執行部에 의해서 一括交渉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地域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支部에서 거기서 체결된 協約案에 관해서 불만을 갖고 지난번 豊山金屬 安康工場의 경우에도 本勞組執行部가 체결한 團體協約案이 無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支部에서 결국은 罷業을 일으킨 경우인데 이렇게 수개 지역에 支部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合理的으로 勞使協商을 할 수 있는 어떤 政策的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에 法律用語는 아니지만 敎社隊 또 僞裝廢業이라는 用語가 一般化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會社에 의한 敎社隊를 동원한 勞組과괴행위라든지 또는 僞裝廢業을 이용한 勞組의 괴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편화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敎社隊와 僞裝廢業은 現行法上으로도 어떤 制裁를 가할 수 있는 不當勞動行爲이기 때문에 敎社隊와 僞裝廢業을 판단할 수 있는 勞動行政上의 指針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아무 指針도 없이 國會나 이런 데서 敎社隊나 僞裝廢業을 단속해라 하면 그때 말로만 하고

객관적인 行政指針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勞動行政을 어떻게 믿고 또 勤勞者들이 어떻게 勞動行政에 신뢰를 줄 수 있겠는지 그래서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行政指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관해서 勞動部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産業災害 그 가운데서도 특히 職業病에 관해서 사회일반의 의식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職業病에 관한 社會的 의식이 고양되자 大企業하고 中小企業에서는 말썽이 많은 有害危險工程만을 따로 떼어 가지고 零細企業에 下講을 주어서 資本이 영세한 소규모 기업이 이와 같은 有害危險工程을 하다가 오히려 産災事故를 많이 일으키고 또 勤勞者에게 職業病을 이환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大企業이나 中小企業이 有害危險工程만을 떼어 가지고 下講을 주는 이런 현상을 政策的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特別法을 制定한다든지 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제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盧仁煥 다음은 南載熙委員 質問하십시오.

○南載熙委員 「모토롤라」 勞使紛糾에 대해서 하나만 국한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質疑의 성격과 또 勞動部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으로 잘 수습하겠느냐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토롤라」의 勞使紛糾에 대해서 言論에 報道된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勞組結成報告大會를 하는 사람을 식당에 가둬놓고 용접을 해가지고 出入을 봉쇄하고 이를 이상 찬바람 더운 바람을 넣어 가면서 괴롭혔고 「신나」를 던진데다가 불을 그어 데서 火傷을 입혔다 이런 것이 일부 新聞에 報道되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잔혹행위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真相을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勞使紛糾이 아니고 韓·美間의 문제로 비약이 되는데 勞動部側에서도 아시겠습니까마는 그 문제와

연관해서 反美口號라든가 反美附着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부쳐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勞使問題만이 아니고 자칫하다가는 韓·美間에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러한 차원으로 발전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나름대로 勞組側 會社側 기타 참고할 사람들을 만나 보았더니 일부 新聞에 報道된 것이 잘못되었다 實相과는 거리가 멀더라 이렇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식당에다 넣고 산소용접기로 용접을 해서 봉쇄했다 그래서 2·3日동안 밀폐된 데다 찬바람 더운바람 다 넣고 非人道的으로 괴롭혔다 이런 일부 新聞報道가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쌍방의 얘기를 들어 보고 現場을 보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식당하고 作業「라인」으로 들어가는 문하고 떨어져 있는데 作業場으로 勞使紛糾이 말려 들지 않게 作業場을 봉쇄한 것이지 식당을 봉쇄한 것은 아니다. 식당의 경우 충분히 出入할만한 뒷문이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다만 勞組側에서는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뒷문이 있었지만 거기에 救社隊들이 버티고 있어서 나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인데 그것하고 新聞에 난 것처럼 용접해서 밀봉을 해버리고 찬바람 더운바람을 넣었다는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新聞이 報道가 다 믿을 것은 못되는구나 또 그 新聞報道로 인해서 實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非人道的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가 보고 쌍방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新聞報道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알았지만 안가본 사람들은 天人共怒할 얘기다. 그러니까 反美口號가 나오고 무슨 「베라」가 나오고 附着物이 생기고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눈사람처럼 커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1次的으로는 그 釋明을 안한 것이 「모토롤라」會社側의 책임입니다마는 또 2次的으로는 그것이 韓·美間의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政府側에서도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釋明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會社側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會社

가 對外公報에는 전혀 둔감한 會社입니다. 전혀 言論에 대해서 真相을 알리려고 노력을 안했다가 新聞社에다가 소위 抗議文 編輯者에게 보내는 편지를 뒤늦게 보내니 그 정도만 가지고 전혀 해명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자기네들 「이미지」가 韓國國民에게 어떻게 투영되는지 전혀 노력을 안하다가 뒤늦게 노력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것도 늦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 「신나」를 뿌렸는데 거기에 누가 성냥을 그어댔다 이것도 일부 新聞報道를 보고서 이렇게 非人道的인 행동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놀랐는데 그것도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증거가 될만한 사진들을 經營者側에서 제시한 것을 보니까 또 그 新聞報道가 과장이다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당을 용접 밀폐했다는 것보다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警察에서 搜查를 해서 그 결과를 보아야만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搜查結果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新聞報道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쇼킹한 얘기가 사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시 일반 國民들에게 납득시킬 만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의외로 큰 사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勞動部側이 너무나 잘 아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현재 누가 불을 질렀느냐 그 밖의 暴力行爲 거기에 대해서 警察에서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勞動委가 內務部에 대해서 물을 權限이 없는 委員會이기 때문에 警察搜查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서 못따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누가 불을 질러 댔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만 그 문제가 풀리는 단서가 될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 會社側이 不當勞動行爲를 한데 대해서 勞動部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것이 남습니다.

쌍방간에 不法行爲가 축적되어 가니까 판단내리기가 어려워요. 누구만이 옳고 누구만

이 그르다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누가 먼저 不法行爲를 자행했느냐 누가 거기에 대한 自救手段으로 不法行爲를 했느냐 이 先後는 다를 것입니다마는 쌍방간에 不法行爲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處罰이 一方的이나 이런 것이 國民의 인상입니다.

真相에 대해서 國民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결과만 놓고 볼 때 왜 근로자만 拘束하고 處罰하고 經營者側은 하나도 處罰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 일반 國民들이 볼 때 의아스럽고 우리 勞動委員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法과 秩序를 확립한다 이렇게 볼 때 勞使紛糾의 경우 쌍방간에 공정하게 法的 執行이아만이 그것이 國民이 납득할 수 있고 勞使間에 납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勞쪽만을 철저히 法으로 處罰하고 使쪽은 處罰이 없느냐 이런 것이 國民의 눈이고 勞動委員會 委員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모토롤라」의 경우에 국한해서 볼 때 不當勞動行爲가 있다는 心證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갑니다. 또 勞動部의 高位層은 아니지만 實務者들도 분명히 不當勞動行爲가 있는 것 같다고 是認을 했습니다.

그러면 勞組側은 이왕에 委員長이 拘束되어 있는데 왜 使用者側에 대해서는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法的 制裁節次를 진행을 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檢察에 不當勞動行爲로 處罰해 달라고 하지 않느냐 너무 오래 끌고 있으니까 이 경우 제가 보기에는 쌍방간에 不法行爲가 누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使用者側에 대해서도 法的 節次가 진행이 되어야만 勞者側도 그래도 勞動部가 또는 우리 政府가 쌍방에 대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갈 것이 아니냐 그 점에서 왜 지금까지 使用者側이 자행한 것이 분명한 또 勞動部의 實務官吏들이 분명히 是認하고 있는 그 不當勞動者에 대해서 勞動部側은 法的인 制裁節次를 진행하는 것을 이제까지 지연시키고 있느냐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法的 制裁를 어떻게 해나갈 방침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長官께서 記錄을 위해서도 여기서 밝혀 두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해서 우리나라에서 發行되는 英字紙에 그것이 자세히 소개되어서 저도 外國에서 오히려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요 나오는데 社內에서 下級社員이 上級社員에게 報告한 報告文이 勞組側에서 입수해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會社側에서 勞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감시를 한 것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다 하는 것이 꼭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는 지금 말한 不當勞動行爲와 관련해서 현재 그 자료에 대해서 勞動部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풀기 위해서 문제는 勞動部에서 不當勞動行爲에 대해서 어떠한 法的 節次를 진행하느냐 한 문제하고 또 警察에서 성냥불을 그어 댄 사람을 비롯한 暴行事態에 대해서 어떻게 搜查를 하느냐 그것이 빨리 해결이 나아만 그 다음 진행이 좋겠는데 그 다음 여기는 勞使間의 協商이니까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모토롤라」의 韓國側 社長이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제너럴 에니저」인가 「다렉터」인데 상당히 격이 낮아요. 하여튼 그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모토롤라」가 反勞組의이라는 것은 國際적으로도 있는 얘기가 아니나 또 그동안에 法律的으로 어떠한 不當勞動行爲를 했느냐는 勞動部와 檢察이 판단할 문제지만 우선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부당한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大韓民國의 法에 따라서 「모토롤라」의 勞動組合은 勞動組合으로서 인정이 된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美國會社라 하더라도 大韓民國에서는 大韓民國 國法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나 그러면 「모토롤라」 勞組가 大韓民國 國法에 의해서 인정된 이상 너희들이 「모토롤라」 勞組에 대해서 너희들이 勞組破壞하려면 몰라도 그럴 의향이 없이 大韓民國法에 의해서 설립된 勞組를 인정하고 勞組와 協商을 하고 共存을 해나간다는 자세라면 우선 선의의 표시로 社內에 勞組事務室 하나 내줘라 그러면 그 하나가 그

동안 당신네들의 反勞組的인 行態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태도를 바꾸었구나 하는 것을 웅변으로 얘기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해결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모토롤라」 韓國側 社長한테 했고 기타 여러 經路를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勞動部에서 法的으로 不當勞動行爲에 대해서 조치하는 문제 하고 또 調整役割의 측면에서는 「모토롤라」會社로 하여금 協商을 하고 있다니까 우선 勞組事務室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어가시고 「모토롤라」의 기본적인 反勞組的 자세가 아니고 그래도 勞組와 共存하고 協商하고 共榮하려는 자세라는 것을 天下에 특히 韓國國民들 美國에 대해서 「모토롤라」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모토롤라」가 정의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부시」大統領도 곧 있으면 온다는데 또 反美的인 운동이 더 격화되기전에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쌓고 쌓아야만 우리 國民들의 오해가 풀리고 反美感情이 조금이라고 진정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勞動部長官께서 「모토롤라」側에서 우선 韓國의 法이 인정한 勞組를 우리도 인정한다 멋있게 그러한 태도를 표명하는 뜻에서 勞組事務室을 내주도록 선의의 권고를 하는 것이 長官의 權限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 점을 이번 「모토롤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 보면서 느낀 문제인데 세가지를 물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不法勞動行爲에 대한 訴追問題가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社內에 外國에도 소개된 報告書問題에 대해서 勞動部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세번째 「모토롤라」社內에 勞組事務室을 설치하도록 經營主側에게 勞動部의 선의의 권고로서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이 세가지를 물었습니다.

「모토롤라」문제가 작은 문제같습니다마는 지금 國內 특히 運動圈에 의해서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그 동안에 「모토롤라」側의 言論에 대한 설명의 부족으로써 이것이

의외로 더 확대된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한해서 勞動部側의 의견을 붙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盧仁煥 다음은 韓光玉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韓光玉委員 平民黨의 韓光玉委員입니다.

먼저 本委員이 現 時局을 보는 견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 두하고자 합니다.

소위 87年度 盧泰愚宣言에 의해서 이 나라가 民主化가 되어 가고 있다 그 盧泰愚宣言에 의해서 憲法이 改正되고 總選이 실시되고 오늘날 國會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民主化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國民들이 民主化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무엇인가 불안해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 民主化가 되어 가는데 國民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國會에서 또는 行政府에서 허심탄회하게 이런 자리에서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當 委員會는 勞動問題를 다루기 때문에 勞動分野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昨年 年末에 大統領께서 상당히 勞使問題에 대해서 강력한 소위 民生治安이라고 하는 美辭麗句를 써가면서 勞使問題에 상당히 강력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本委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各 企業體 또는 勞使關係에 있어서 平和의으로 또는 自律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大統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강강한 방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民主化가 잘 되는 과정에서 當 委員會에 속하는 勞動分野만 해도 民主化가 과연 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가 강력대응조치로서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조짐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지금 勞動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月이 되면 흔히 말하는 소위 春鬪라고 그래서 賃金鬪爭을 비롯해가지고 여러가지 勞使關係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勞動行政을 담당하고 있는 當部에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와 분석에 따라서 對策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長官에게 앞으로 예상되는 이 春鬪 賃金 또는 勞使關係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對策과 腹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長官이 평상시에 腹案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문제는 먼저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지금 韓光玉委員께서 앞으로 勞使問題에 대한 여러가지 충정어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韓國經濟가 지난 해에 12%의 經濟成長을 이룩했고 連 3年동안 經濟計劃을 보더라도 8%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것을 基本運用計劃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企業이나 근로자나 國民이나 특별히 勞動委員會에 계시는 委員님들께서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勞使의 産業平和를 期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經濟性을 이룩할 수 없다. 韓國經濟가 先進國으로 갈 수 있는 문턱에서 후퇴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는 換率의 문제 保護貿易主義에 의한 輸出의 打擊問題 3高의 문제 또 있지만 무엇보다도 産業平和를 期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課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勞動行政에서는 우선 이러한 중요한 것을 모든 國民들이 그러한 共感帶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勞動行政을 꾸러나갈 基本目標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고 지금 勞動行政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勞動行政 자체의 專門性이라든가 또 國民이나 근로자가 企業에서 信賴性을 받을 수 있는 勞動行政을 具現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基本目標을 두고 저희들은 勞動行政을 꾸려 나가고 특별히 이러한 勞使紛糾의 조정에 있어서 教育이나 勞使商談 活動을 통해서라든가 또 우리 職員들의 資質向上을 통해서 調整役割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 行政 자체는 事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懸案問題 해결보다도 豫防行政의 측면에서 능동적인 行政을 期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問題解決을 法秩序 테두리에서 할 수 있도록 勞動爭議調整機能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豫防受容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의 勤勞條件을 개선해서 福祉增進을 期하는 방향으로 行政을 꾸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좋습니다.

長官께서는 當 委員會의 같은 同僚委員으로서 國會議員의 視角에서 본 勞動行政에 대한 여러가지 腹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長官이 就任하신지는 일천하지만 그 勞動行政에 대해서 나름대로 所信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중에 몇 마디 의미 있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所信껏 勞動行政을 끝어나간다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賃金鬭爭 소위 勤勞者들이 政治的인 鬭爭보다는 소위 實益鬭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鬭爭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리라고 本委員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賃金鬭爭에 있어가지고 지금 勞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最低生計費 62.5% 生存費로서 26.8%의 引上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經總에서는 平均 10.9%로 勞總과 經總의 賃金引上에 대한 目標額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장 賃金引上鬭爭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春鬭에 임하는 長官으로서의 對策중의 하나가 賃金引上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될 것이다 라고 長官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長官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今年度 春鬭에 있어서 團體交涉의 제일 중요한 爭點이 賃金の 문제이고 賃金の 문제는 사실은 勞使間의 所得分配의 어떤 均衡에 의한 不信이 초래되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勞總에서 지금 제시한 生計費와 物價 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한 것하고 또 經總에서 낸 것 하고는 10%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韓國經濟의 실정과 企業의 실정 여러가지 또 근로자의 生計費問題 등 이런 종합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政府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率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勞動研究院을 통한다든가 해서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했고 釜山이라든가 仁川地域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勞·使·政懇談會를 통해서 상호간에 賃金交涉이 타결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한 이것이 交涉過程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居中調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企業의 실태를 근로자들이 信賴性있게 믿을 수 있는 風土造成을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政府의 立場이 그러한 것을 못 밝히는 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光玉委員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經總과 勞總間에 서로 引上額에 대한 주장이 크기 때문에 政府에서 발표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勞動部側의 答辯過程을 꼭 지켜 보았는데 몇가지만 추려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중에서 소위 勞動部의 姿勢轉換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答辯하는 자세 또 擔當局長 實務陣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本委員이 보기로는 아직도 舊態依然하다. 어떤 면에서 舊態依然하나? 무엇인가 社會는 進歩的으로 되어 있고 勤勞者들의 요구조건

또 勞使問題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本委員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答辯問題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是正을 해야 되겠다 이런 答辯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의 그런 答辯을 듣지 못하고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合理化시키려고 하는데 급급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평가가 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本委員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를 들면 防産業體에서 解雇된 근로자들에 대한 徵集問題에 있어서 李相洙委員께서 아주 집요하게 質問하셨는데 사실 그것 말이 안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原因無效의 상태가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군대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미 몸은 군대에 가 있는데 그때 原因無效되면 그 補償은 누가 해주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除籍이 되면 즉각 勸狀이 나갑니다. 과거 5共때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맥락속에서 그러한 「패턴」이 지금 勞動界에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렇게 本委員이 규정해도 行政府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長官께서 所信을 가지고 關係當局하고 協議해서 그와 같은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答辯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도 그랬지만 擔當局長들께서 所信있게 과감하게 是正할 것은 是正하고 잘못된 것은 솔직히 是認해야 됩니다.

우리가 神이 아닌 이상 行政府側이나 이國會側에서 실수는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是認하는 것처럼 가장 훌륭한 일이 없고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실수를 是認하는 것부터 그것은 고쳐지고 그것은 바로 進歩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고 既得權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이社會의 進歩나 民主化를 위해서는 反動的인 하나의 行態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 아까 同僚委員인 南載熙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外國人 企業體들이 그동안 韓國에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상황이 다름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없는 나라에 工場을 세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막대한 利益을 남기고 소위 勤勞者들의 정당한 주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전부 철수해 가는 다 시 말해서 골치 아프다 우리는 投資한만큼 돈을 다걸어 갔다 우리는 閉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것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요.

國家利益의 次元에서 우선 勞動者들에 대한 문제 또 企業이 가지고 있는 倫理性 이런 문제에 대해서 勞動部側에서 소위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休閉業問題 또한 徹收했을 때의 勞使對策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對策을 가지고 있는가 나중에 答辯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토롤라」事件은 本委員하고 南載熙委員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本委員이 조사한 대로 몇마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토롤라」會社는 世界 各國 20餘個 이상의 나라에 支社를 두고 있는 모양인데 勞組를 彈壓하고 또 자기의 利益을 위해서는 어떠한 彈壓도 자행하고 있다 라는 대단히 평판이 좋지 않은 會社다 이렇게 本委員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87年8월에 이미 「모토롤라」會社에서는 勞組幹部들을 납치하고 또 監禁 暴行하고 그래가지고 勞組를 解散시킨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모토롤라 코리아」에서는 87年8月18日 勞組가 設立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勞使間에 앞으로 勞使協議會 등을 活性化하기로 합의하고 組合員들이 解散決議를 해가지고 同年9月15日에 解散措置된 것으로 調査結果 파악되었습니다.

○**韓光玉委員** 지난번 27日 勞組員 이강옥 강문일 손봉호 이종찬 등이 救社隊의 沮止 線을 뚫고 會社本館으로 들어 가려고 위협 용으로 「신나」를 뿌렸는데 아까 同僚委員은 성냥불을 그어 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성냥불을 그어 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當部에서 調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答辯해 주십시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勞動組合員들이 會社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위협용으로 「신나」를 내명이 몸에 뿌렸다는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는 거기에 과연 누가 어떻게 引火를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러니까 「신나」를 뿌린 사람에게 성냥불을 그어댄 사람이 없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引火를 했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겠습니까라는 그것이 누구였는지 그것을 當局에서 가려낼 바입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本委員이 파악하기로는 幹部중에 末端幹部 金某씨가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當部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좀 더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이것은 警察問題로 搜查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中間結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나중에 報告를 받으면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로 南載熙 先輩委員께서 質疑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具體的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라는 여기에 資料를 꼭 보면 救社隊라고 해가지고 動員計劃해가지고 엄청나요. 이 會社에서 소위 勞動者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었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도대체 外國人企業體라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法的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는 勞動者들에 대

해서 이렇게 非人道的으로 다루었을 수 있을 것인가가 직나라하게 여기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신나」를 뿌린 勞動者에게 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도 판단을 本委員이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두지휘한 사람도 美國人 副社長이라고 그 당시에 왔던 모양인데 그 사람이 진두지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람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本委員이 조사한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當部에서는 이 使用主側에 대해서 소위 不當勞動行爲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告發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使用主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勞動者만 拘束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韓光玉委員님께서 제시하신 資料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會議가 끝나면 그것을 한부 주시면 業務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모토롤라 코리아」의 不當勞動行爲에 대해서는 저희 本部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不當勞動行爲 調査指示를 일찍부터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月9日부터 監督官 5名이 투입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事項은 會社側에서 組織 및 非組織 勤勞者間 즉 勞組員과 非勞組員間의 충돌로 雙方에 不法行爲가 있었음에도 組合員 72名에 대해서만 一方的으로 出勤停止를 하도록 했고 또한 현재 拘束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도총환 組合代表등 4名을 解雇한 것은 勞動組合法 39條 1項에 위배되는 不當勞動行爲라는 심증을 갖고 있고 이것은 현재 勞組委員長 職務代行 허정숙의 告發이 있었던 事項입니다. 그리고 救社隊 暴力事實에 대해서는 非勞組員側에서 外部勢力 자기내 勤勞者가 아닌 다른 外部勢力과 합세해서 外部勢力이 職場을 점거하기 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自衛行爲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事業主의 지시가 있었는데

지 방조여부를 확인 조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資料는 저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寫本을 하나 주시면은 저희가 地方事務所에 내려보내서 철저히 조사토록 해서 아무리 外國人企業이라도 國內法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도 방권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런데 國會에서 答辯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本委員 불 때는 대단히 불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本委員이 이러한 資料를 입수했을 때는 關係當局인 勞動部에서는 이런 정도의 資料는 입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런 資料가 없다 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答辯을 어떻게 합니까?

○勞動部長官 張永結 제가 全體的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委員님께서 그러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勤勞監督官의 資質問題에 대해서 委員님들도 여러번 말씀이 계시가지고 이번에 會期가 끝나는 대로 제가 勤勞監督官에 대한 教育을 그 동안에 정말 한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勤勞監督官과 함께 1泊2日이든지 2泊3日이든 숙식을 같이 하면서 勤勞監督官의 資質向上과 또 實質的으로 勤勞監督官들의 어려운 실정을 들어가면서 정말 앞으로 이 勞使紛糾가 일어나는데 있어서 勤勞監督官들이 정말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하고 또 精神教育도 기하고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 勞政局長이 答辯한 것에 대한 불충분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이제 長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勤勞監督官의 資質問題와 報酬問題 두가지를 놓고 昨年에 勞動委員會에서 與野를 막론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그때 長官께서 勞動委員會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 勤勞監督官의 手當 한푼이라도... 私席에서도 또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豫決委小委員會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勤勞監督官의 資質을 높여서 우리 勤勞者들의 勤勞의 條件 또 勤勞者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난관을 넘고서 勤勞監督官에 대한 처우를 우리 委員會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勤勞監督官의 資質問題 이것도 향상을 시켜주시고 또 그렇게 따라가 주셔야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勞動行政에 대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長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하고 모토로라에 대한 대단히 가슴아픈 단면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모토로라에 女性副委員長 정종옥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電算室에서 救社隊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임신중이던 정종옥씨가 낙태가 되니까 그 남편이 바로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非人道的인 치사가 자기 會社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會社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와 같이 억울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줄 뿐 아니라 또 會社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依法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폭행한 사람은 暴行罪로 당연히 法的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예, 알겠습니다.

○韓光玉委員 그 다음에 外國人業體의 여러가지 休廢業關係 수도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제가 일일이 이름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外國人들 投資企業體들이 소위 勞使紛糾에 시달린다고 해서 自意的으로 休廢業한 業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勞動部가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僞裝廢業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상응한 法的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外國人投資業體에 대한 것도 여러가지 勞動部로서는 國內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一線機關에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國內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그 다음에 금강제화의 勞使紛糾事件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本委員의 參謀들을 많이 보내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勞組設立을 이유로 해가지고 事務金融勞聯에 가서 救社隊들이 폭행을 해가지고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다가 빠져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當部에서 이미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當部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금강제화는 현재 本社가 서울 城東區에 있고 明洞營業所가 있습니다. 代表者는 신기철이고 業種은 主生産品이 구두가 되겠습니다. 勤勞者數는 1,090名인데 本社가 410名 富坪工場이 180名 販賣社員이 400名 그렇습니다.

勞動組合 현재 組合員이 490餘名이고 組合長은 안복남씨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爭點은 生産職이 중심이 되어서 설립한 既存勞動組合에 事務職 및 販賣職社員들이 第2勞組의 설립을 요구하면서 規約變更問題가 생겨서 紛糾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1月28日 同社 事務職 및 販賣社員 120名이 勞組를 결성한 후에 中區廳에 設立申告書를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會社에는 勞組가 있기 때문에 組織對象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려가 된 바가 있고 그러자 1월30日 既存勞動組合은 대부분이 生産職社員이고 營業社員이 50餘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既存勞組에 事務職과 販賣社員이 별도로 勞組를 설립할 수 있도록 規約改正을 요구를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月31日은 事務職과 販賣社員 120餘名이 同社 明洞營業所에서 民主勞組爭取口號를 외치면서 籠城을 했고 그 이후 계속 紛糾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난 2月20日 生産職 勞組幹部 및 組合員과 下請業體代表 50餘名이 事務金融勞聯 事務室을 접거 事務金融勞聯의 금강제화 紛糾介入 中斷 등을 요구하면서 事務室 집기류를 부수고 幹部 2名の 얼굴을 구타했다 하는 報告를 최근의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망이 會社側은 既存勞動組合과 籠城勤勞者間에 自律的으로 협상토록 하고 그 協商結果에 따를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될 전망이 불투명상태입니다.

○**韓光玉委員** 저기까지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되었는데 이 勞動組合法 3條 5項에 대해서 組織이 중복된다 하는 이야기는 견해가 각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소위 會社側에서 救社隊를 事務金融勞聯에 보내가지고 폭행을 한데 있는데 거기에서 신고를 했는데 다섯시간동안 管轄警察署에서 전혀 들여다 보지도 않았다. 소위 官權과 야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勤勞監督官이 있었어요. 報告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本委員이 입수한 것으로 보면 2月20日 1時30分頃 70餘名の 組織暴力輩로 구성된 救社隊가 事務金融勞聯 事務室에 난입을 해서 南大門警察署의 김재훈刑事 또는 乙支路1街 派出所長 그리고 서울 地方廳 尹敬순 勤勞監督官이 보는 앞에서 聯盟 副委員長 하창환 씨 聯盟 教育訓練部長 정일영씨 등 2名을 19時까지 무려 다섯時間 30分間 감금해 놓고 暴行 및 暴言 집기를 부수었다. 그러면 도대체 白晝에 救社隊가 한 단체의 事務室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暴行을 했는데 警察은 무엇을 했으며 또 勞動部는 무엇을 했느냐 더군다나 勞動部 勤勞監督官이 現場에 있었으니 도대체 勞動部가 뭐하는 덴니까?

(盧仁煥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勞動部長官 張永喆** 韓委員님께서 저희들이 아는 事項보다는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勤勞監督官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報告는 아직 저희들이 못받았음니다마는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勤勞監督官들이 勤勞者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또 行政을 해나가고 또 調停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정말 精神的인 教育과 資質 여러가지 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資質向上과 정말 公務員의 어떤 事項 특히 勤勞者를 보호하고 감독한다는 측면에서 像을 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그 다음에 仁川 富川의 民主 勤勞者會議 소위 仁勞會라고 그러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勞動部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事件은 잘 아실테니까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事件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소위 6共和國에 들어와 가지고 保安法 적용 소위 利敵行爲로서 利敵團體로서 적용된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本委員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本委員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令狀이 기각되었는데 다시 官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令狀을 떼가지고 拘束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勞動部에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令狀이 기각된 사람들을 檢察側에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令狀이 다섯명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 勞動組合 탄압행위로서 하나의 극치를 이룬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勞動行政의 總責任者로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勞動組合法이라든가 勤勞基準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關係事項 같으면 제가 그 事案에 따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警察에서 保安法違反으로 한 事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答辯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光玉委員 이 사건에 대해서 長官으로서

報告는 받으셨지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韓光玉委員 그 사건에 대해서 報告를 받으시고 다음대로 長官의 견해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法的인 문제니까 이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해 보신 것인지 아니면 소위 勞動行政의 책임자로서 이 團體는 利敵團體같다 法에 의해서 依法處斷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 것이예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韓光玉委員 생각을 좀 깊이 해 보세요. 本委員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團體를 利敵團體로 몰게 되면 앞으로 대단히 어려운 勞動運動의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拘束하고 또 釋放해라 하고 악순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나라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新聞에 이러한 政治性이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다룬다라는 産業災害問題 사실 심각합니다.

우리가 勤勞者들에게 實益을 줄 수 있는 문제가 賃金引上에 못지않게 産業災害豫防과 産業災害를 당한 勤勞者들에 대한 補償案입니다.

지금 本委員이 가지고 있는 資料에 의하면 88年度の 産業災害者 그러니까 職業病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14萬2,329명입니다. 그런데 72年度에는 불과 4萬2,000명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중에 死亡者가 1,925명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사람이상 죽은 것이예요. 그런데 災害者數는 87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死亡者數는 오히려 16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災害率을 各國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48%이고 日本은 0.61% 臺灣에는 0.7% 「싱가포르」는 0.94%입니다.

우리나라가 經濟的으로는 상당히 성장을 했고 外國에 나가보면 우리 나라의 經濟成長을 부럽게 보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經濟成長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經濟發展이라고 하는 것은 所得再分配를 말합니다. 所得이 公正分配되는 것 福

社社會 이런 것이 혼합되었을 때 그것을 총평할 때 수치가 여러가지 형태로 나오겠지만 經濟發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우리가 先進國에 진입하는 나라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예만 들지요.

京畿道 抱川의 성동金屬工業株式會社 作業場에서 근무하던 천창석씨가 작업하다가 27馬力の 고속전동주에 옷자락이 휘말리자고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기갈기 흔적이 없을 정도로 참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現代建設의 전성준씨는 「이라크 바그다드」現場에서 작업중에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會社側의 고의적인 책임회피와 勞動部의 무성의한 조치로 인해 가지고 産災補償時效期間이 3년이 넘는 바람에 産災補償을 받지 못했다 하는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製造業體인 전한실업에서 김용성 이광남씨가 死亡을 했고 7名の 중독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노동하고 한달에 평균 1주일 내지 10일씩 철야작업을 해 오다가 변을 당하고 職業病에 걸렸는데 이것을 소위 「트리클로드 에틸렌」중독이라고 합니다.

의성실업의 황영철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 사람의 給與明細書를 보았는데 基本給이 13萬9,840원인데 연장근로수당이 51만3,190원이어서 總支給額 81萬7,420원입니다.

이 業體는 軍納品 철망製造業體인데 防衛産業體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勤勞手當이 51萬3,190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8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밥먹고 세수하고 변소가고 하면 여섯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18시간을 했느냐 그것을 내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가족의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會社에서는 이 사람이 과로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自然死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해보시면 알 것이고 여기에 本委員이 입수한 1988年度11月分 給與明細書

가 있습니다. 이것보면 거짓말 못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과연 하루에 18시간을 근무를 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수당이 4,000원 직책수당이 1萬5,000원 주휴수당이 3萬6,800원 연장근로수당이 347시간에 59萬8,580원 야간근로수당이 97시간으로 해가지고 5萬6,070원 유해위험근로수당이 16日 1萬4,000원 휴일근로수당이 2日 3萬6,800원 월차수당이 9,200원 이래가지고 總支給額이 89萬9,250원입니다. 거기에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를 제해서 실수령액이 67萬1,270원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외에 여러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1960年代 이후에 高度成長 위주로 하다 보니까 勤勞者들의 작업환경개선을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선 배고프니까 배를 채워야 되겠으니까 우선 돈을 버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것 이해를 합니다. 기업쪽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살만큼 되었다 이 말이에요. 勤勞者들의 作業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의 건강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작업능률도 오르고 그것이 施設投資가 되고 그 사람들의 근무의욕이 높아지면 生産率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勞動部에서 이제 얘기한 賃金問題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소위 春闘에 대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産業災害의 철저한 예방과 勤勞者들의 환경개선 및 福祉對策을 빨리 정확하세 아주 완벽할 정도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腹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委員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마는 勞動部에 계시는 長官이하 幹部들에게 소위 勞動行政을 다루고 勞動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몸가짐을 바꿔야 되겠다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社會는 勞動者들이나 企業들이 다 진보하고 있는데 勞動部의 勞動政策을 다루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이라든가 근무의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옛날과 똑 같다고 하면 어떻게 따라잡니까? 會社는 앞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勞動部에 계시는 분들도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로 말하면 몸통이 돌아야지요. 몸통이 안돌면 머리하고 팔다리가 따로 놀지 않습니까? 長官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밑에서 안따라와 주면 안되는 것이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中央의 勞動部本部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會同 안 하시고 일선에 있는 勤勞監督官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또 제대로 안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 産業社會 産業平和를 위해서 産業發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세전환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資料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인말에 勞動部長官의 特別指示로 傘下機關에 特別監査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로써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이상으로 다섯委員의 質疑가 끝났습니다. 오늘 開議시간도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答辯준비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여러분 委員님들이나 勞動部側의 휴식도 취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50分 會議中止)

(18時3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 質疑에 대한 政府側 答辯順序입니다. 勞動部長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勞動部長官입니다.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金鎔采委員님께서 業務報告書 內容을 보시면서 사실상 紛糾로 인한 國家的 損失이 크에도 불구하고 紛糾가 大幅 減少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見解에 대해서 말씀이 계

입니다.

지난해 紛糾 發生件數가 87年度에 비해 減少되었으나 사실상 經濟社會的 損失이 많았는데 대하여는 共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7年度 여름 이후의 紛糾經驗을 통해 勞使 兩側이 法筋次에 따라 문제를 解決하려는 의식도 높아져 지난 해에는 爭議 發生申告가 부러 2,207件 87年의 경우 72件이 접수되어 이 중 약 80%가 勞動委員會의 알선 조정단계에서 妥結됨으로써 實力行使를 수반하는 紛糾까지 비화하는 경우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勞使紛糾件數는 감소되었으나 紛糾 自體가 長期化 大型化 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한 經濟的 損失이 막대함은 물론 經濟 社會的 不安 要因으로 擡頭되고 있음을 銘心하여 앞으로 勞使 雙方에 대한 教育과 指導를 強化하여 勞使問題가 원만히 解決되어 나가도록 最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勞使紛糾와 관련한 公權力行使에 있어서 勞動部가 소외되는 등 勞動部의 신뢰가 추락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業務報告書上의 關係部處와 紛糾要因 深層 分析內容은 무엇이며 先進 諸國의 勞使問題 解決先例를 研究토록 促求하시면서 經濟部處를 비롯한 汎政府의으로 勞使問題에 대한 根本對策 樹立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勞使問題는 이제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治安次元이 아닌 그야말로 순수히 勞動行政 次元에서 解決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며 이러한 意志의 表現으로 昨年 10月13日 國務總理訓令인 勞動對策會議規定을 廢止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勞使問題는 勞使 當事者의 對話와 交涉을 통해 解決되도록 하는 한편 全 勞動行政 人力과 機構를 동원하여 勞使紛糾가 원만히 解決되도록 조성역할의 強化에 最善을 다 하고자 또한 勞使團體와 연계하여 勞使教育을 대폭 擴大 實施함으로써 건전한 勞使觀이 定立되고 交涉能力이 向上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勤勞監督 機能을 效率的으로 運營하여 紛糾要因을 根源的으로 解消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金委員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勞

使問題의 根本的 解決對策을 汎政府的으로 마련 推進하기 위하여 今年初에 關係部處와 合同으로 勞動行政改善對策班을 構成하여 主要 產業의 紛糾豫防對策 및 貨金交涉關聯 課題에 관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實務委員會를 개최한 바 있으며 分野別 對策이 成案段階에 있습니다.

앞으로 同 對策班에서 確定된 對策을 關係部處가 公동으로 차질없이 推進하여 勞使問題가 國家次元에서 신속히 解決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委員님께서 助言해 주신 先進 諸國의 勞使問題 解決先例 研究問題는 去年에 發足된 韓國勞動研究院 등을 통하여 深層 研究토록 하고 그 結果를 勞動政策에 최대한 반영하여 效率的이고 國民의 期待에 부응하는 勞動行政이 遂行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

앞으로 實施할 地方自治團體와 關하여 地方化 時代에 부응한 勞動行政의 構想을 물으셨습니다.

勞動行政은 주로 사람을 다루는 行政으로 다른 分野 行政과는 달리 人間關係가 重視되는 分野입니다.

따라서 行政의 專門性和 統一性 그리고 迅速성이 要求되고 있으며 이러한 勞動行政의 達成에 부합하는 方向에서 地方化 問題도 檢討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當部에서도 地方化時代에 대비한 經濟的 社會的 與件에 부응하는 行政改革委員會에서 심층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行政改革委員會의 最終案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關係部處와 協議하여 地方勞動行政의 遂行에 차질이 없도록 對處해 나가겠습니다.

李仁濟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첫째 外國人 投資企業體의 現況과 勞動組合數에 대해서 質問이 계셨습니다.

外國人 投資企業體數는 88年末 現제 164個 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勞動組合數등 구체적인 現況은 관계자료를 調查하여 追後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번째 李仁濟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은 外國人 投資企業體의 勞使紛糾 要因別 類型

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外國人 投資企業體의 경우에도 貨金引上 및 勤勞條件의 改善 등이 主要 爭點으로 되고 있으나 勞組의 活動과 關聯된 紛糾도 많이 發生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 業體紛糾의 배경에도 自國人과의 差別待遇등 民族的인 感情問題가 複合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紛糾要因에 대한 具體的 資料도 양해하여 주시면 追後 書面으로 提出하겠습니다.

李委員께서 세번째로 質疑를 하신 것은 駐韓 外國人會社에 대한 정밀감독 실시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勞動部에서는 노사분규다발 및 근로조건이 취약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을 시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駐韓 外國人會社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駐韓 外國人會社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는 地方勞動 官署에 확인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李相洙委員님의 質疑에도 答辯드릴 바와 같이 會社가 休·廢業할 경우 사전신고를 지도하여 노사합의와 사후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 駐韓 美軍從事 勤勞者 現況과 부당처우 실태 및 韓·美行政協定上 韓國勤勞者의 노동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駐韓 美軍從事 勤勞者는 약 2萬4,000名입니다. 주한 미군중사 근로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쟁의는 韓·美行政協定 第17條第4項에 규정된 절차 즉 美軍내의 법정처리 절차로서 설치된 司令部訴請委員會에서 1차적으로 해결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勞動部가 美軍測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정에서 실패한 경우 韓·美合同委員會에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勞動部는 근로자들의 개별적 진정있는 경우 事案別로 美軍側에 재조사를 요청하되 우리측의 의견과 방증자료를 들어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하면 美軍司令部는 本部 人事

局과 監察官室을 통하여 해고사유를 정밀 재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해고와 관련하여 韓·美간에 계류중인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아울러 駐韓美軍從事 勤勞者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韓·美行政協定을 개정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李委員님께서 勞組側의 교섭대표위원이 조인한 단체협약안을 다시 조합원 투표에 회부함으로써 노사분규 발생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체협약안은 勞動組合法 第34條에 따라 당연히 교섭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함으로써效力이 發生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조에서는 이를 다시 조합원 투표에 회부함으로써 노사분규가 재발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當部는 이러한 현상이 노조의 代表性에 그 原因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勞組代表의 民主的 選出과 組合運營의 民主化를 통하여 勞組代表性이 確保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 勞組罷業 與否에 관한 勞組員들의 投票가 公正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勞組의 罷業은 勞組가 그 主張을 貫徹시키기 위하여 最後의 手段으로 使用하는 것이고 이는 勞使 兩側에 대해 많은 損害를 가져다 주므로 반드시 組合員 全體의 總意를 積법절차에 따라 확인하여 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組合員의 意思를 確認하는 과정은 勞組의 自主적이고 民主的인 運營原則에 따라 組合規約에 의거 自律的으로 處理되어야 할 것이나 필요한 경우 產別聯盟 등 上級團體의 適切한 指導下에 公正하게 實施해 나가는 方案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 한 기업이 수개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단체교섭에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現行法上으로 동일기업이 수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개의 勞動組合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支部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서 특정 공장의 근로자 의견이 소외되는 등 문제에 대하여는 勞動組合의 민주적 운영과 代議員 選出 및 勞使交涉代表의 합리적 배정을 통하여 모든 공장의 종업원이 고루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 소위 敎社隊 僞裝廢業 判斷基準에 대한 행정지침 제정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위 敎社隊 및 僞裝廢業問題는 현재 勞動組合法 39條에 따라 不當勞動行爲 處理指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指針을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 마지막으로 最近 職業病이 社會問題化되면서 大企業이 有害 危險工程을 小企業에 하청을 주는 事例가 있는데 이를 制度的으로 防止할 수 있는 對策을 물으셨습니다.

産業安全保健法 第22條에 의하면 都給事業의 경우 元請者에게 災害豫防 責任을 一部 부과하고 있으나 李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大企業이 零細 小企業에 有害工程의 一部分을 都給하는 경우에는 場所를 달리하는 곳에서의 賃加工 協力業體 注文生産 등 그 형태가 매우 多樣하기 때문에 劃一的으로 法適用이 어려운 實情입니다.

따라서 勞動部는 今年에 自動車部品 業體나 第1次 金屬産業 造船業 등과 같이 元·下請關係가 많은 業種에 대하여 그 實態를 면밀히 調査한 후 元·下請業體間에 共同安全管理方案 등 制度的 裝置를 多角的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委員님들께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동안에 勞動部 行政措置事項이 늦었고 未洽한대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勞動行政을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南載熙委員님께서 「모토로라코리아」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조사 지연 사유와 대책 회사보고서가 外紙에 게재된 것에 대한 의견과 사내에 노조사무실 마련을 권고할 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勞動部の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근로감독관 5명을 투입조사하고 있으며 조직 비조직 근로자간의 충돌에 사업주 방조여부 조합장 김홍석등 72명에 대한 출근정지 조합장 도충환등 4명을 징계 해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변명같습니다. 마는 美國人 社長이 2月23일에 귀국할 예정으로 귀국하는 즉시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회사내 보고서가 의지에 게재된 사실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만 외국잡지나 신문에의 게재는 향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회사내에 노조사무실 마련에 대하여도 노사분규 해결의 차원에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長님께서 여러가지 저희들에게 勞動行政에 대한 方向이라든가 저희들 職員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결론에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저나 勞動部 幹部職員들이 韓委員長의 충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勞動行政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번째 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最近 國內의 外國人 投資企業의 休·廢業으로 근로자 集團解雇 사태가 發生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對策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企業의 自由가 保障되고 있는 現經濟 體制下에서 企業이 진정한 經營上의 이유로 부득이 休·廢業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近來에 원화절상 수출감소 제조원가의 상승등 經營惡化에 起因하여 休·廢業하는 事例가 많이 發生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의 統計에 의하면 外國人 投資企業中 昨年 한해동안 休·廢業으로 投資認可가 取消된 企業은 70個所이고 新規認可된 業體는 105個所로 集計되고 있습니다.

政府는 이와같은 休·廢業으로 因한 근로자의 失職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企業이 休·廢業으로 5人이상의 集團解雇나 減員이 불가피할 때는 일단 1個月前에 事前 申告토록 指導하여 休·廢業의 사유가 순수한 經營上

이유로 判明되는 경우에도 事業主에 再考의 機會를 부여하고 勞使가 이해를 하고 평화리에 休·廢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失職 근로자에 대한 各種 金品清算과 사전에 轉職訓練 등 사후대책을 勞·使·政間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時間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반면에 經營上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勞動運動 防害등을 目的으로 廢業하여 勞使問題를 야기한 業體에 대하여는 精密監督을 實施하여 法違反 事項에 대하여는 強力 依法處理 하겠습니다.

韓委員長님께서 '60年代이후 高度成長 위주정책으로 그간 소홀히 되어왔던 作業環境改善 및 産業災害豫防이 긴요한데 이에 대한 對策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81年 産業안전보건법의 制定 施行을 계기로 災害率은 每年 減少하고 있으나 韓委員長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88年末 現在 災害率은 2.48%로서 아직도 日本 臺灣 등에 비해서는 3·4배이상 높은 實情입니다.

따라서 當部에서는 '93년까지 災害率은 先進國 水準인 1%미만으로 減少시키기 위하여 長·短期 對策을 樹立하여 적극 推進하고 있습니다.

短期 主要對策으로는 産災豫防教育을 擴大하여 勞·使 災害豫防意識을 제고하고 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改善計劃樹立 및 安全診斷의 實施등으로 산재취약 위험요인을 改善 除去토록 하며 重大災害發生 사업장과 안전 기준위반 事業主에 대한 處罰을 強化하는 한편 직업병 유발업체에 대한 점검과 事業體 작업환경조사 등으로 作業環境을 조속히 改善토록 지도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고 아울러 근로자 건강진단 制度의 개선과 직업병 상담실 설치 운영등 직업병을 早期 發見 치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실질적인 勞動者의 勤勞條件作業環境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政府에서는 産業安全管理公園을 만들었고 또한 勞動部本部에 産業安全局과 地方事務所에 産業安全課를 둬으로써 行政的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長期的으로는 안전보건 기술의 개발과 專門人力 양성을 促進하며 有害物質 제조 사용전 신고제 실시등 根源의 安全性 確保制度를 도입토록 하고 企業의 安保保健 投資促進을 위한 유인제도 등을 講究해 나갈 計劃입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補充質疑할 委員계십니까?

盧武鉉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盧武鉉委員 補充質疑라기보다 資料要請입니다.

資料要請書를 한부 드렸읍니다마는 조금 加減할 것이 있어서 訂正하겠습니다. 3項에 三星重工業 勞動組合이 있는데 여기 요청해 놓은 것중 勞動部에서 88年11月28日 이후 各種 指示에 따른 忠武地方勞動事務所에 요구한 報告書 전부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나와있는 것같아서 이것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4번까지만 되어있는데 거기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제 口頭로 요청한 것이 오늘 나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 응답이 없습니다. 없는데 無勞動 無賃金에 대한 原則을 勞動部에서 항상 표명하고 있는 理論的인 根據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國內外에 나와있는 批判意見에 관한 資料 그리고 批判意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原則을 견지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 쌍방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資料 따위들을 補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法律的 性格이 勞動部가 行政指導인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이 부분에 관해서 누차 반복해서 行政指導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울러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勞動部에서 관행으로 정착시켜서 시행하고 있는 制度中에서 韓國보다 先進國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特別하게 있는 制度들을 발췌해 주십시오.

그것이 資料要請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번 資料提出을 文書로 하기도 하고 口頭로 하기도 했는데 항상 答辯이 없는 부분도 있고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복사

를 해가지고 한부씩 남겨두고 또박또박 생기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그냥 말장난하고 넘어가는 곳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뭔가 좀더 좋은 政策을 함께 논의하고 찾아나가기 위한 곳인지 한번 그 점도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資料要請에 있어서 성실한 答辯을 요구하는 뜻에서 한가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미 三星重工業 勞動組合의 紛糾와 관련해서 三星系列企業이 지금까지 勞動組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三星重工業 管轄勞動事務所에서 또 각종 동향보고서에서 三星의 지금까지의 방침으로 보아 勞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 있고 그 위에 이것이 不法이라는 것을 인정한 여러가지 報告文件이 있습니다.

例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三星그룹이 勞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各種의 僞計 또는 壓力에 의해서 勞組의 設立과 運營을 妨害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公知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勞組는 三星의 사용자가 지배하고 개입해 있는 不當勞動行爲의 산물로서 또는 그 道具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天下가 다 아는 公知의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共同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같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局長이 報告하면서 國會에서 그 幽靈組合의 명단을 요구한데 대해서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괴변을 論하는 不提出事由書를 놓고 읽어보니까 상당히 사유의 내용이 일리가 있는 것같고 妥當한 것같아서 우리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本 常委에서 이것이 使用者가 勞組에 개입하고 있는 혐의를 조사해서 報告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수궁되어 있는 사실인데 調查報告는 전혀 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온 서류가 참 신빙성이 있다 이것 도대체 國會를 어떻게 보고 하는 일인지 앞으로

이와 같은 태도가 계속될 때 정말 常委員 長官이 전혀 존중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점에 관련해서 長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長官이 일일이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長官을 補佐하는 여러 公務員이 業務를 잘 補佐를 못해서 마치 長官이 國會를 輕視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勞動政策에 관해서 國會가 매우 심한 거부감을 가지도록 이와같이 補佐한데 대해서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措置로서 적어도 勞動部長官이라도 이 國會에 대해서 輕視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態度를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盧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성실한 資料에 대한 문제라든지 저희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나 全 幹部職員들이 성실하게 臨할 수 있도록 주의를 喚起시키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長官 答辯가운데 성실하게 제출하라고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答辯은 있을 수 없습니다. 長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結**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韓光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光玉委員 質疑**라기 보다는 제가 조금전에 質疑過程에서 產災問題를 제 나름대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2月19日에 某 日刊紙에 한토막 記事를 소개하는 것은 長官이나 關係局長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나온 記事를 보면 高速버스 運轉士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직장을 잃고 產業災害 障礙者가 된 趙圭辰씨 나이는 44歲 서울 盧原區에 사는 趙圭辰씨가 지난 두달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新聞의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趙씨는 덮어둘까 생각했지만 앞으로 다른 被害者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간의 사정을 公開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 사람이 產災保險等級의 9等級 판

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勞動部 관리가 찾아와서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다고 합니다. A씨라고 하는 이 사람 이야기는 12等級밖에 안되는데 病院에서 9等級으로 잘못 판정한 것이니까 勞動部 指定病院으로 보내 12等級으로 變更措置할 수 있다고 하면서 9等級과 12等級의 補償金額이 600餘萬원정도나 차이가 나니 200萬원을 떼어주면 잘 봐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응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補償金支給에 있어 가지고 추가로 所見書를 받고 補償金額을 다시 算定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400萬원이 더 늘어난 1,400餘萬원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A씨는 지난번 요구했던 200萬원을 다시 修正해서 돈을 더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200萬원이 더 늘어난 400萬원을 더 주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요구대로 補償金이 나오면 入金할 수 있는 예금통장까지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날 前까지 지급되기로 했던 補償金이 決裁가 안 떨어지고 여러차례 연기가 되어서 趙圭辰씨가 화가 나서 A씨에 항의하고 자기 나름대로 일종의 분노를 터트린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A씨가 자기 돈이라고 하면서 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허리를 다쳐서 운전할 수 없어 살기도 막연한데 그 災害報償金인데 等級가지고 장난하고 험박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잘 단속하세요.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金炳龍委員 발언하십시오.

○**金炳龍委員** 신애電子에 대해서 勞動部の 책임있는 勞使問題 해결의 方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政府側에서 答辯이 勞使間에 交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會期中에 만약 勞使間에 합의가 안되면 企業主를 拘束한다는 원칙을 長官께서 자리에서 答辯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金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聯合勞動組合聯盟에 속해 있는 病院勞聯 이 문제는 長官으로서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으나 政府로서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聯合勞動組合聯盟이 다른 委員님들노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제기하셨습니다마는 60餘가지를 規約에다가 정해 놓고 이 規約에 準한다는 이 이유로서 만약 독립이 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政府로서 이를 판단해서 聯合勞動組合側에 강력하게 이러한 同一 事業場이 數百個가 있는데 이것을 안에다 넣어 놓고 어물어물 聯合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政府로서 강력하게 獨立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勞動部와 그 傘下機關의 現況報告와 委員質疑에 대한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하기 前에 委員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勞動委員會의 議事日程이 23日 全體會議에서 法案審査小委員會에서 올라온 法案을 議決할 예정이었읍니다마는 法案審査小委員會의 法案審査 과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내일 午前도 그렇지 못할 사정이어서 小委員會 요청이 돌아오는 28日에 어떻게든지 審査해서 法案을 上程하겠습니다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당초 정해진 議事日程 가운데 내일 23日 하루 全體會議는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드리고 그 외에는 이미 정해진 議事日程에 變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를 散會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9時12分 散會)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南 載 熙
盧 仁 煥	安 瓚 熙	李 康 熙
鄭 宗 澤	李 相 洙	李 海 瓚
韓 光 玉	盧 武 鉉	柳 昇 珪
李 仁 濟	金 炳 龍	金 鎔 采

○**委員아닌出席議員**

鄭 昌 和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卓 英	鍾 燮
立 法 審 議 官	宋 芳	鍾 燮

○**出席國務委員**

勞 動 部 長 官	張 永 喆
-----------	-------

○**出席政府委員**

勞 動 部		
次 官	李 龍	俊 佑
企劃管理室長	鄭 東	春 德
勞 政 局 長	具 然	憲 誠
勤勞基準局長	金 濟	憲 誠
職業安定局長	金 禹	斤 錫
職業訓練局長	姜 尹	斤 錫
勞動保險局長		春 存
產業安全局長		春 存